

제46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2012. 3

총 목 차

【 1 주 제 】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
--	---

【 2 주 제 】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47
--------------------------------	----

제1 주제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2012. 3. 6

박명호 · 송헌재

목 차

I. 서 론	7
II. 납세협력비용 감축	9
1. 납세협력비용의 정의	9
2. 우리나라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추정	11
가. 전체 납세협력비용	11
나. 정보제공의무별 납세협력비용 현황	15
3. 납세협력비용 주요 감축사업	21
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21
나. 근로소득자 민원증명발급 사이트 개설	22
다. 지급명세서 수시 전자제출시스템 도입	23
라. 원천세 수정신고 전자제출 도입	24
마. 공익법인 전자신고시스템 도입	24
바. 홈택스를 이용한 휴·폐업신고	25
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26
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 전자신고 개선	27
자. 국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인하	28
차. 사업자등록 민원업무 세적관할 폐지	28
4.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29
가. 납세협력비용 감축 성과 측정사업의 필요성	29
나. 제도 측면의 개선방향	30
다. 행정 측면의 개선방향	31

Ⅲ. 납세순응도 제고	33
1. 우리나라의 납세순응 실태	33
2. 납세순응행위의 결정요인 분석: 실험적 접근	39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39
나. 연구 내용 및 결과	40
다. 정책시사점	42
3.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43
가. 실험결과로부터의 시사점	43
나. 납세순응도 측정모형 개발의 필요성	43
다. 제도 측면의 개선방향	44
Ⅳ. 결 론	45
참고문헌	46

표 목 차

<표 II-1> GDP 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중	11
<표 II-2> 주요국의 납세협력비용	12
<표 II-3> 주요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13
<표 II-4> 주요 세목별 행정부담의 상대적 순위	14
<표 II-5> 주요국의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15
<표 II-6> 정보제공의무의 유형별 현황	16
<표 II-7> 정보제공의무 유형별 납세협력비용 분포	17
<표 II-8> 상위 10개 정보제공의무: 전체사업자 ¹⁾ 납세협력비용 기준	18
<표 II-9> 상위 10개 정보제공의무: 법인사업자 납세협력비용 기준	19
<표 II-10> 상위 10개 정보제공의무: 개인사업자 납세협력비용 기준	20
<표 II-11> 납세협력비용 축소 주요과제	21
<표 II-12>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비교	22
<표 II-13> 전자신고 대상 서식	25
<표 III-1>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소득탈루율 추이	34
<표 III-2> 수입금액 규모별 종합소득세 소득탈루율 및 평균 소득탈루 금액	35
<표 III-3>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36
<표 III-4> 연도별 국세체납 발생 및 징수 실태	38
<표 III-5> 통계청 등의 자료를 통해 추정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 추이	39

그림 목차

[그림 Ⅱ-1] 납세협력비용 개념도	10
[그림 Ⅱ-2] 수시제출로 인한 업무변화흐름	23
[그림 Ⅱ-3] 전자제출 확대에 의한 업무변화흐름	24
[그림 Ⅲ-1] 세율구조·선정방식별 소득신고율 및 과소신고 여부 비율	42

I. 서론

- 1990년대 중반 이후 납세협력비용은 기업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OECD 주요국 사이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함
 -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의 OECD 주요국들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하여야 할 자원을 정부 규제로 인한 행정적인 업무에 상당히 많이 투입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약화, 나아가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오는 것으로 파악됨

- 이들 국가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행정적인 부담(Administrative Burden)을 범정부 차원에서 측정함바, 기업에 부과되는 행정부담이 GDP의 2~4% 정도로 추산됨
 - 이 중 조세로 인한 부담이 대체로 1/4 수준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제의 장기적인 효율성과 성장률 및 노동생산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기대됨
 -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청은 행정부담을 25% 정도 축소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실질 GDP의 1.5% 증가와 노동생산성의 1.7% 증가를 가져온다고 분석함

- 향후 복지수요 등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법에서 정한 세수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납세협력비용 감축과 더불어 납세순응도 제고가 세정의 당면과제로 대두됨

- 미국발 금융위기 및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세수여건은 비우호적인 상황인 반면,
 - 최근 세율 또는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하여 탈세의 경제적 유인이 강화되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재정 여건에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는 외부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의 확보가 요구됨
 - 세입·세출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조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세수를 증가시키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은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것임
- 본고는 우리나라 납세협력비용 규모에 대한 기존 연구의 추정결과와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하여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함
- 또한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실험을 통하여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납세협력비용 감축

1. 납세협력비용의 정의

- 납세협력비용이란 조세제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전체 비용 가운데 직접적으로 납부한 세금과 조세제도의 비중립성, 즉 자원배분의 왜곡효과로 발생하는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나타냄

$$\begin{aligned} \text{납세협력비용} &= \text{조세제도로 인해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 \\ &\quad - \text{직접 납부한 세금} - \text{초과부담} \end{aligned}$$

- 납세협력비용의 구체적인 포괄범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조차 아직 일관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음
- 최근 정부 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행정적인 부담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활발하게 사용되는 표준비용모형을 조세제도에도 적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함
 - 사실상 조세제도도 민간부문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정부 규제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임
 - 측정대상이 되는 협의의 납세협력비용은 민간부문이 조세제도가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행정적인 비용을 말함

[그림 II-1] 납세협력비용 개념도



- 위의 그림 중 납세협력비용은 계량화하기 힘든 심리적인 비용 등을 제외한 부분들을 거의 포괄하는 것임
 - 광의의 납세협력비용에서는 납세자의 납세순응 관련 심리적 비용도 포함하나 실제로 객관적인 측정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의 측정에서 이런 비용은 배제됨

- 광의의 납세협력비용에는 납세순응비용도 포함됨
 - 납세순응비용이란 납부의 의무를 충족하고자 납부자가 지출하는 자원의 가치를 의미함
 - 비효율적인 각종 세금, 공과금의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편익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보다 확대해석하면 조세정책 및 세제의 만족도 등 비금전적인 요인도 납세순응비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2. 우리나라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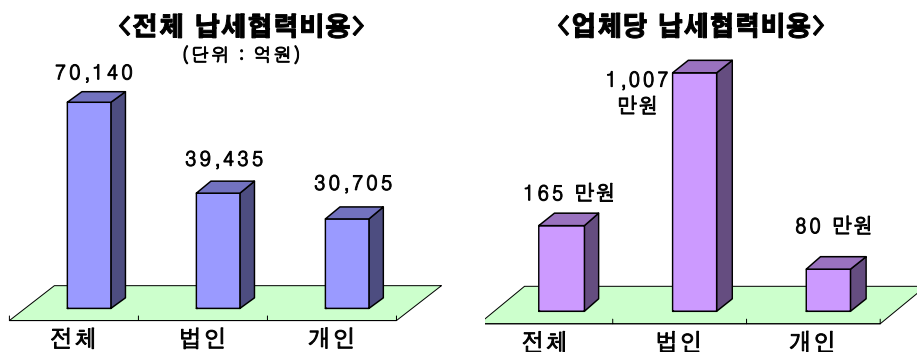
가. 전체 납세협력비용

- 박명호·정재호(2008)는 2007년 기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 의한 총납세협력비용을 약 7.01조원으로 추정하였음
 - 이는 우리나라 2007년 GDP 대비 0.78% 수준임
 - 납세협력비용 발생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만을 추정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비사업자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납세협력비용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됨

<표 II -1> GDP 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납세협력비용	GDP 대비 비중
법인사업자	39,435	0.44
개인사업자	30,705	0.34
합 계	70,140	0.78



자료: 국세청(2009)

- 각국의 분석 범위(포괄하는 세목, 조세체계 구성) 및 측정하는 납세협력비용 범위(일상적 행정비용 포함 여부 등) 등이 상이하여 다른 국가들과 총 납세협력비용을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포괄세목 및 측정대상 비용 범위 등의 차이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나타난 자료를 통해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총납세협력비용 규모는 GDP 대비 비중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0.95%보다 작은 규모임
 - 덴마크(2001년)의 0.67%보다 약간 높으며, 영국의 0.42%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

<표 II -2> 주요국의 납세협력비용

(단위: 억, %)

국가별	연도	세법·세무행정 관련 행정부담	GDP 대비 비중
오스트리아(€)	2007	10.8	0.40
덴마크(€)	2001	12	0.67
	2004	11	0.56
네덜란드(€)	2002	44.3	0.95
영국(£)	2005	51.0	0.42

주: 영국의 경우 일상적 행정비용(Business as Usual Costs)을 제외한 비용인 반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이를 포함한 비용

자료: 박명호·정재호(2008)

-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3대 세목이 총납세협력비용의 85.8%를 차지함
 - 3대 세목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은 우리나라 GDP 대비 약 0.67%
 - 3대 세목의 국제청 총세수 대비 기여도는 약 6.0% 수준

<표 II -3> 주요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단위: 억원, %)

세목	납세협력비용		세수 대비 비중	GDP 대비 비중
	금액	점유비		
법 인 세	19,573	27.9	5.5	0.22
부 가 가 치 세	22,189	31.6	5.4	0.25
소 득 세	18,416	26.3	7.5	0.20
소 계	60,718	85.8	6.0	0.67
총 비 용	70,140	100	4.6	0.78

- 세목별로 부가가치세(31.6%)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법인세(27.9%)와 소득세(26.3%)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세가 높은 이유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신고횟수(연간 2 ~ 4회)도 많기 때문임
 - 부가가치세 분야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액 또는 과세유형 제도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예)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 예정신고 면제
- 법인세 관련비용은 소득세와 비슷하나 납세자 수를 고려할 경우 1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이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복잡한 계산절차와 첨부서류 과다가 원인으로 분석됨
 - 납세자 수: 전체 4,244천명, 법인 392천명(9.2%), 개인 3,853천명(90.1%)
- 세수 100원당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4.58원이 소요됨
 - 주요 세목별 세수 100원당 비용은 소득세 7.5원, 법인세 5.5원, 부가가치세 5.4원, 기타세목이 1.8원으로 분석됨
 - 세수효과가 적은 과세미달 또는 영세납세자의 신고의무 이행에 따라 소득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됨

- OECD 발표 자료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국가별로 일관되게 가장 많은 납세 협력비용을 발생하는 세목으로 나타남

<표 II-4> 주요 세목별 행정부담의 상대적 순위

국가	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오스트리아	1		3	2	
캐나다	3	2 ¹⁾	3	1	
체코	2	1	3	4 ²⁾	
덴마크	1	n.a	1	2	
독일			2	1	
아일랜드 ³⁾	2		2	1	
네덜란드	2		3	1	
노르웨이	n.a ⁴⁾	n.a	n.a	1	2
남아공				1	
스웨덴	n.a	n.a	2	1	3
영국	1		3	2	

주: 1) 캐나다 급여세는 사회보장기여금과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포함

2) 체코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측정방법 상 문제로 저평가된 것으로 자체 평가

3) 2007년 '기업규제서베이'라는 ESRI 보고서에 따른 OECD 자체의 주관적 평가

4) n.a는 동 세목이 존재하나 이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이 측정되지 않았음을 의미

자료: OECD(2008), *Programs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Tax Regulations in Selected Countries*.

- 주요국의 세목별 납세협력비용을 비교해 볼때 우리나라는 GDP 대비 비중 기준으로 네덜란드와 유사함
- 네덜란드의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은 GDP 대비 0.28%

<표 II -5> 주요국의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단위: 억, %)

국가	세목	세법 세무행정 관련 행정부담	GDP 대비 비중
오스트리아(€) 2007년	소득세	6.0	0.22
	부가가치세	2.9	0.11
덴마크(€) 2004년	소득세	5.9	0.30
	부가가치세	1.3	0.07
네덜란드(€) 2002년	부가가치세	13	0.28
	소득세	6	0.13
	Wage/Salaries Tax	7	0.15
영국(£) 2005년	법인세	6.1	0.05
	부가가치세	10.2	0.08
	사업소득세	8.6	0.07
	고용주세	7.6	0.06

자료: OECD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나. 정보제공의무별 납세협력비용 현황

1) 정보제공의무 파악 및 분류

- 일반적으로 정보제공의무란 행정기관이 법령 등에 의거하여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특정 정보를 서면·전산·기타 다른 형태로 행정기관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비치, 갱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함
 - 행정기관 외에 민간기관 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
 -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단순히 작성하여 비치하는 의무도 포함
 - 사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세무조사 협조의무

- 법인 및 개인 사업자와 관련된 국세행정과 관련된 정보제공의무는 13개 유형 493개로 분류됨

- '공제·감면' 유형이 174개로 가장 많은 의무를 부여하여 전체 정보제공의무 개수 중 35.3% 차지함
- 공제·감면 다음으로 '신고·납부' 관련 정보제공의무가 115개(23.3%)로 나타남

<표 II-6> 정보제공의무의 유형별 현황

(단위: 개, %)

정보제공의무 유형	개수	전체 대비 비중
1. 등록	19	3.9
2. 거래증빙발급	12	2.4
3. 증빙수취·장부기장	14	2.8
4. 변경사항(사실)통지	33	6.7
5. 인가·승인신청	60	12.2
6. 허가·면제신청	9	1.8
7. 질의회신	1	0.2
8. 신고·납부	115	23.3
9. 공제·감면	174	35.3
10. 세무조사·자료소명	6	1.2
11. 불복청구	10	2.0
12. 증지(증명)부착	3	0.6
13. 과세자료제출	37	7.5
합 계	493	100

2) 정보제공의무 유형별 비용

- 총 납세협력비용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에게 가장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정보제공의무 유형은 '증빙수취·장부기장' 유형으로 총 납세협력비용의 약 43.3% 정도를 차지

- 그 다음으로 '신고·납부' 유형, '제3자에 대한 거래증빙발급' 유형 순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
- 이 3가지 유형이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총 납세협력비용의 약 83.3%를 차지

<표 II-7> 정보제공의무 유형별 납세협력비용 분포

(단위: 억원, %)

정보제공의무 유형	전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1. 등록	685	1.0	123	0.3	562	1.8
2. 거래증빙발급	11,864	16.9	5,967	15.1	5,897	19.2
3. 증빙수취·장부기장	30,395	43.3	14,922	37.8	15,473	50.4
4. 변경사항 및 사실통지	123	0.2	37	0.1	86	0.3
5. 인가(승인)신청	97	0.1	49	0.1	48	0.2
6. 허가·면제신청	0	0.0	-	0.0	0	0.0
7. 질의회신	485	0.7	148	0.4	337	1.1
8. 신고·납부	16,155	23.0	11,581	29.4	4,575	14.9
9. 공제·감면	2,578	3.7	1,488	3.8	1,091	3.6
10. 세무조사·과세자료처리	798	1.1	569	1.4	229	0.7
11. 불복청구	668	1.0	315	0.8	353	1.2
12. 증지(증명)부착	-	0.0	-	0.0	-	0.0
13. 과세자료제출	6,291	9.0	4,237	10.7	2,054	6.7
합 계	70,140	100	39,435	100	30,705	100

자료: 국세청

- 전체사업자의 총 납세협력비용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가장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정보제공의무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거래 증빙을 수취하여 정리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로 조사

- 이어 '장부기장' 의무, '세금계산서발급' 의무 순으로 파악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관련 정보제공의무들도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

<표 II -8> 상위 10개 정보제공의무: 전체사업자¹⁾ 납세협력비용 기준

(단위: 억원, %)

순위	정보제공의무 과제 명칭	세목	납세협력비용	
			금액	점유비
1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법인/소득	15,405	22.0
2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	법인/소득/부가	10,702	15.3
3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	8,358	11.9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	4,171	5.9
5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 5년간 보존	부가	4,026	5.7
6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	1,620	2.3
7	지급명세서의 제출	원천	2,684	3.8
8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2,122	3.0
9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법인/소득	2,120	3.0
10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등 작성	법인	834	1.2
	상위 10 합계	-	52,043	74.2
	총납세협력비용	-	70,140	100

주: 1)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자료: 국세청

□ 법인사업자 납세협력비용 3조 9,435억원 중 상위 10개 정보제공의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74.8%로 나타남

- 법인사업자에게 가장 많은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정보제공의무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으로 약 7,491 억원으로 조사됨

- 그 다음으로 '세금계산서교부' 의무, '장부기장' 의무에 각각 5,308억원과 5,202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측정됨

<표 II -9> 상위 10개 정보제공의무: 법인사업자 납세협력비용 기준

(단위: 억원, %)

순위	정보제공의무 과제 명칭	세목	납세협력 비용	
			금액	점유비
1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법인	7,491	19.0
2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	5,308	13.5
3	장부기장 및 비치	법인/부가	5,202	13.2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	3,365	8.5
5	지급명세서의 제출	원천	2,347	6.0
6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 5년간 보존	부가	2,117	5.4
7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	1,561	4.0
8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등 작성	법인	834	2.1
9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법인	687	1.7
10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법인	577	1.5
	상위 10 합계	-	29,489	74.8
	총비용(법인사업자 기준)	-	39,435	100

자료 : 국세청

- 개인사업자 납세협력비용 3조 705억원 중 상위 10개 정보제공의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84.7%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보다 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많은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정보제공의무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로서, 이로 인한 납세협력비용은 7,914억원으로 조사됨

- 그 다음으로 '장부기장' 의무, '세금계산서교부' 의무에 각각 5,500억원과 3,050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표 II -10> 상위 10개 정보제공의무: 개인사업자 납세협력비용 기준

(단위: 억원, %)

순위	정보제공의무 과제 명칭	세목	납세협력비용	
			금액	점유비
1	경비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	소득	7,914	25.8
2	장부기장 및 비치	소득/부가	5,500	17.9
3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	3,050	9.9
4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	2,122	6.9
5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소득	1,975	6.4
6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 5년간 보존	부가	1,910	6.2
7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	1,620	5.3
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	806	2.6
9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소득	770	2.5
10	지급명세서의 제출	원천	337	1.3
	상위 10 합계		26,004	84.7
	총비용(개인사업자 기준)		30,705	100

자료 : 국세청

3. 납세협력비용 주요 감축사업

- 국세청은 현재 납세협력비용의 감축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음
 - <표 II-6>은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주요 10개 과제를 보여줌

<표 II-11> 납세협력비용 축소 주요과제

번호	소관과	과 제 명	시행시기
1	전자세원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2010년 1월
2	정보개발2	근로소득자 민원증명발급 사이트 개설	2009년 7월
3	원 천	지급명세서 수시 전자제출시스템 도입	2008년 10월
4	원 천	원천세 수정신고 전자제출 도입	2009년 3월
5	법 인	공익법인 전자신고시스템 도입	2009년 3월
6	부 가	홈택스를 이용한 휴·폐업신고	2009년 6월
7	원 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2007년 1월
8	정보개발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 전자신고 개선	2009년 12월
9	징 세	국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인하	2010년 1월
10	부 가	사업자등록 민원업무 세적관할 폐지	2009년 10월

자료: 국세청

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행·수취 및 관리를 할 수 있음

<표 II -12>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비교

구 분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형태	종이	전자파일
인감 날인	실제 인감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수신방법	직접 또는 우편 수신	이메일로 수신
자료보관 형태	종이로 보관	전자파일로 보관
자료 검색	수동 검색	조건검색 등 맞춤형 검색
합계표 작성 형식	개별명세 기재 필요	전송분은 개별명세 기재 안함

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e 세稅로路」도 정식개통」(2009.12.30.)

-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함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현금영수증 의무화제도 등과 함께 세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기업의 건전 경영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근로소득자 민원증명발급 사이트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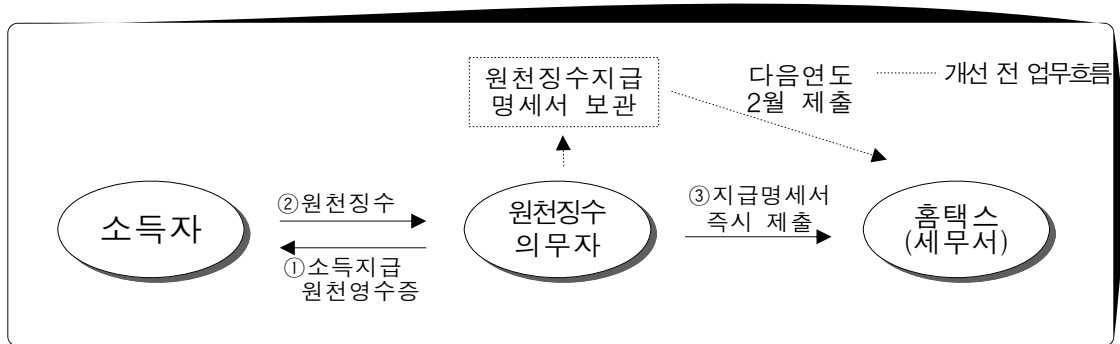
- 근로소득자가 신청 가능한 민원증명 종류 또는 발급신청 방법 등에 대한 문의 사례가 잦음에 따라 「근로소득자 전용 민원증명발급」 페이지를 개발하여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근로소득자의 주요 민원증명 발급 대상 업무인 납세증명서 신청 및 소득금액증명 신청의 경우 과거에는 홈택스에 접속 후 여러 단계를 거쳐 증명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근로소득자 전용 증명발급’ 바로가기를 이용할 경우 홈택스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2단계의 단순한 절차를 거쳐 증명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 이용자 접근성이 개선됨

- 2010년 7월 30일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전산발급 업무를 개시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지급명세서 수시 전자제출시스템 도입

- 중도퇴사나 휴·폐업으로 발생하는 지급명세서를 인터넷에서 수시로 전자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함

[그림 II-2] 수시제출로 인한 업무변화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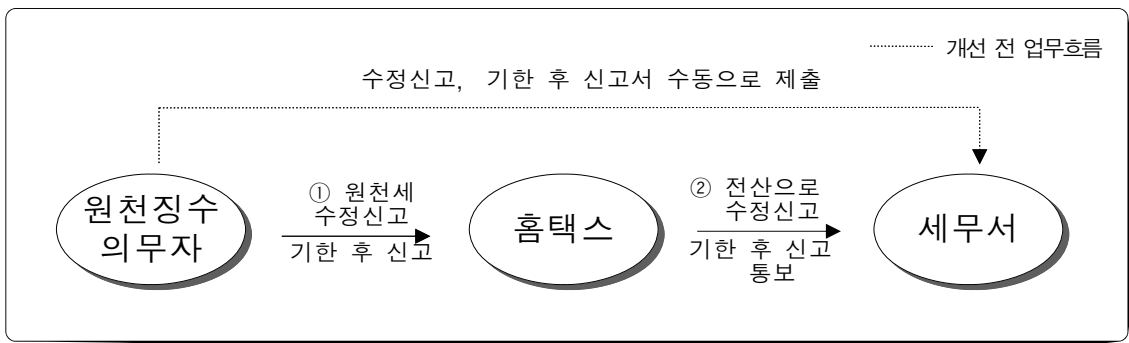
- 수시제출 대상이 되는 지급명세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스템 도입 효과 극대화를 도모함
 - 2008년 10월 사업·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 2009년 10월 근로·퇴직 소득, 기부금·의료비 지급명세서 → 2010년 10월 이자·배당·사업연 말 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과 가능성 감소와 업무 시간 단축 등의 개선 효과가 기대됨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중도퇴사나 폐업 등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지급명세서를 즉시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어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미제출금액의 2%) 부과 가능성이 감소함

- 대량으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 지급명세서를 월별로 분할하여 제출할 수 있어 매년 2월에 한꺼번에 제출할 경우 홈택스 오류검증이나 전송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을 해결함

라. 원천세 수정신고 전자제출 도입

- 원천세에 대하여 정기분에 대해서만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였으나 수정신고에 대해서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함

[그림 II-3] 전자제출 확대에 의한 업무변화흐름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 수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였으나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도록 개선함으로써 세무서 방문비용 및 우편비용 등의 감소가 기대됨

마. 공익법인 전자신고시스템 도입

-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의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식 15종 중 범용성이 강한 서식 8종에 대한 전자제출 시스템을 구축함

<표 II-13> 전자신고 대상 서식

순번	서 식 명	비 고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방식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	작성방식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작성&변환방식
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작성&변환방식
5	운용소득의 사용 명세서	작성방식
6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작성방식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작성방식
8	특정 기업광고 등 명세서	작성방식

자료: 국세청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의 수동제출 및 입력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 및 일선 업무량 감축 가능성이 기대됨
- 향후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를 전자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확대하여 전자제출 시스템을 이용자 시각에서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바. 홈택스를 이용한 휴·폐업신고

- 홈택스에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휴·폐업(재개업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영업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방치하는 사례가 많음
 - 폐업신고 지연 및 미처리로 인하여 불필요한 안내문 발송 및 무신고 현지 확인으로 업무량이 과중됨
- 홈택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 등 필요 없이 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휴·폐업신고서를 접수함

- 납세자가 최종 전송 전에 팝업창으로 사업자등록증 회수, 사업실적에 대한 제세 신고 안내 등의 주의사항 안내
- 접수된 휴·폐업은 세적담당 확인절차를 거쳐 TIS에 수록
- 휴·폐업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 연계

- 휴·폐업 신고를 위한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게 되어 납세협력비용과 무신고 현지 확인 축소 등 직원 업무량 감소가 기대됨

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

- 국세청은 2006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자료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함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대상 항목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전자문서(PDF)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 저축 등 11개 항목임
-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기부금과 취약전 아동보육료, 사립유치원비 등 항목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음
 - 신규제공: 기부금, 교육비 중 취약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기부금 및 교육비 영수증

발급자가 2011년 1월 7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함

- 기부금과 교육비 자료제출 요령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의 납세자 코너(자료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부처의 통합정보시스템 및 협회를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소득공제 항목이 근로자에게 추가 제공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이 감축되고 영수증 발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기 정착시킬 수 있음

□ 국세청은 앞으로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시력교정용 안경 등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 전자신고 개선

□ 부가가치세 수정(경정청구)신고의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함

- 부가가치세 정기분 신고 외의 수정(경정청구)신고는 전자신고가 시행되지 않아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고 있었으나,
-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수정(경정) 신고 서비스 제공 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부가세 수정 신고서 작성 후 전송하면 신고가 종료됨

□ 납부기한 후·수정(경정청구)신고를 위한 세무서 방문비용 절감효과와 신고서 재입력에 따른 업무량 감축효과를 기대

자.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 국세청에서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제공을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상을 확대하고 납부대행수수료를 인하함
 - 개인사업자, 5개 세목(소득세, 부가세, 주세, 종부세, 개별소비세), 200만원 → 개인, 법인 모든 사업자, 모든 세목, 500만원 이하로 확대
 -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1.5% → 1.2%)

-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세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 제고 효과가 기대됨
 - 납부대행수수료를 최소한으로 부담하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체납의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함
 -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경우 자금 부족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세금 분납효과가 발생함

-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사용자 편의 위주의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납부절차를 간소화하였음

차. 사업자등록 민원업무 세적관할 폐지

- 사업자가 인근의 이용이 편리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휴·폐업신고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신고 등의 업무에서 본인확인 등의 사유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

- 특히 폐업신고의 경우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안내문 발송, 무신고자 확인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됨
- 세무서 방문에 따른 교통비용 감소와 폐업신고에 따른 행정비용 감소효과가 기대됨
 - 사업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인근의 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비 등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됨
 -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안내문 발송, 무신고자 확인 등에 따른 행정비용 또한 절감됨

4.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가. 납세협력비용 감축 성과 측정사업의 필요성

- OECD 주요국의 사례처럼 중점 감축분야의 선정, 특정시점까지의 감축 목표량을 제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됨
 - 단기적인 접근이 아닌 5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행정 간소화 노력을 공식화·제도화하여 지속적·공개적인 감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 영국 등 같이 국세행정 조직 내에 동 사업을 전담할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여야 할 것임

-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 감축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임

나. 제도 측면의 개선방향

- 납세협력비용의 체계적 감축을 위해서는 향후 각종 세제 및 세정관련 법 제정·개정 시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효과의 측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비용감축 목표치를 설정한 국가들은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제도를 도입하여 세법령 변화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순증감 규모의 측정을 통해 목표치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있음
- 납세협력비용은 민간이 부담하는 행정적 비용의 일부분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업무 중 일부는 세법 외의 법규정에 의한 업무와도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 행정부처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의 체계적인 측정 경험 및 효과적인 감축방안 마련을 통해 향후 타 부처의 모범이 되고 민간의 행정비용 축소를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업, 타 정부부처, 세무·회계전문가, IT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작업하는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함
 - 영국의 '행정부담자문위원회'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공식적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협력비용 감축사업 운영의 지원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 주기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의 마련 및 실행 중인 방안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이를 국회 등에 보고하는 체계가 필요함

다. 행정 측면의 개선방향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대부분의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더불어서 종이세금계산서도 함께 발급하여 감축효과를 반감시킬 여지가 있음
 - 근본적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시행 초기의 불안감에 의해 종이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사업자 간 전자세금계산서의 호환성 문제로 종이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음
 -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하여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서로 호환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표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연말정산 관련 납세협력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고도화의 방향 중 한 예를 들면, 소득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간의 연동을 추구하여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를 납세자가 확인한 후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바로 자동으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정확성을 제고한다는 의미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누락되는 자료를 최소화하자는 의미임

- 향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편리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원천징수의 무자를 통한 연말정산보다는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연말정산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그동안 징세편의를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정보를 노출시켜 왔던 관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Ⅲ. 납세순응도 제고

1. 우리나라의 납세순응 실태

- 우리나라의 납세순응 실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탈세 및 체납관련 정보나 학계에서 통계청 등의 자료를 사용한 탈세 수준을 추정한 연구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최근 4년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세무조사 결과는 실제 소득 중 상당한 금액이 제대로 신고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함
 - 법인보다는 개인의 소득탈루율이 높고, 법인과 개인 모두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탈루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조사된 영세한 법인이나 개인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소득탈루율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표 Ⅲ-1> 과 <표 Ⅲ-2> 참조

<표 III-1>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소득탈루율 추이

(단위: 십억원, %)

수입금액 규모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신고소득 (a)	결정소득 (b)	탈루율 (1-a/b)	신고소득 (a)	결정소득 (b)	탈루율 (1-a/b)	신고소득 (a)	결정소득 (b)	탈루율 (1-a/b)	신고소득 (a)	결정소득 (b)	탈루율 (1-a/b)	신고소득 (a)	결정소득 (b)	탈루율 (1-a/b)
5억 이하	7.7	66.7	88.45	46.0	459.6	89.98	35.1	83.3	57.88	70.4	141.3	50.21	51.8	240.3	78.43
10억 이하	15.7	77.1	79.68	48.4	122.5	60.53	24.0	45.4	47.07	11.5	44.3	74.12	28.5	193.1	85.24
20억 이하	88.6	145.4	39.09	48.2	135.0	64.33	113.1	161.9	30.17	53.9	140.8	61.71	65.5	143.9	54.49
50억 이하	278.3	565.0	50.75	189.1	495.5	61.83	302.0	451.7	33.13	381.2	799.3	52.31	377.8	710.5	46.83
1백억 이하	314.5	538.1	41.56	295.8	655.0	54.84	472.7	1,384.7	65.86	404.6	657.0	38.41	668.8	878.6	23.88
2백억 이하	582.4	833.8	30.15	421.6	913.1	53.83	1,437.8	1,709.1	15.88	786.3	1,085.8	27.58	733.9	1,372.2	46.52
5백억 이하	1,430.0	1,851.4	22.76	1,022.6	1,530.8	33.20	1,303.9	1,897.9	31.30	1,327.2	1,714.7	22.60	1,987.4	2,984.3	33.41
1천억 이하	1,391.7	1,716.5	18.92	866.3	1,236.3	29.93	1,139.5	1,435.9	20.64	1,398.5	1,632.2	14.31	2,904.3	3,644.1	20.30
5천억 이하	4,421.1	5,269.1	16.09	3,670.9	4,620.5	20.55	6,160.1	7,594.4	18.89	4,869.5	5,280.7	7.79	9,221.7	10,438.6	11.66
5천억 초과	33,508.2	36,379.8	7.89	30,570.0	34,056.5	10.24	33,060.8	34,627.2	4.52	22,091.0	24,046.5	8.13	39,593.3	42,467.3	6.77
합계	42,038.2	47,442.9	11.39	37,178.8	44,224.9	15.93	44,049.0	49,391.5	10.82	31,394.1	35,542.6	11.67	55,632.9	63,073.1	11.80
대법인	40,108.4	44,415.9	9.70	35,680.8	40,741.5	12.42	41,166.4	44,760.6	8.03	29,121.9	31,963.4	8.89	52,864.2	58,342.9	9.39
중소법인	1,929.8	3,026.9	36.24	1,498.0	3,483.4	57.00	2,882.6	4,630.9	37.75	2,272.2	3,579.2	36.52	2,768.8	4,730.2	41.47

주: 1. 대법인은 총수입금액 300억원 이상 법인을 말함.

2. 해당연도 중 조사를 완료한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Ⅲ-2> 수입금액 규모별 종합소득세 소득탈루율 및 평균 소득탈루 금액

(단위: 명, 억원)

수입금액 규모별	2006년						2007년						2008년					
	조사 인원	신고 소득	결정 소득	소득 탈루율	평균 탈루 소득	수입금액 규모별	조사 인원	신고 소득	결정 소득	소득 탈루율	평균 탈루 소득	수입금액 규모별	조사 인원	신고 소득	결정 소득	소득 탈루율	평균 탈루 소득	
1억 이하	294	83.8	365.6	77.1%	0.96	1억 이하	157	42.1	199.3	78.9%	1.00	1억 이하	122	59.7	188.8	68.4%	1.06	
5억 이하	1,699	1,075.6	1,736.1	38.0%	0.39	5억 이하	1,152	831.6	1,521.8	45.4%	0.60	5억 이하	854	826.8	1,426.8	42.1%	0.70	
10억 이하	796	1,120.5	1,838.6	39.1%	0.90	10억 이하	1,130	1,755.8	2,892.7	39.3%	1.01	10억 이하	840	1,546.6	2,366.7	34.7%	0.98	
50억 이하	986	4,656.4	6,828.2	31.8%	2.20	50억 이하	1,351	5,234.2	8,875.4	41.0%	2.70	50억 이하	1,181	4,182.4	6,458.3	35.2%	1.93	
50억 초과	274	5,473.6	7,853.2	30.3%	8.68	50억 초과	300	3,961.5	6,159.8	35.7%	7.33	50억 초과	338	11,632.0	13,448.8	13.5%	5.38	
합계	4,049	12,409.7	18,621.7	33.4%	1.53	합계	4,090	11,825.2	19,649.0	39.8%	1.91	합계	3,335	18,247.4	23,889.3	23.6%	1.69	
수입금액 규모별	2009년						2010년						평균 탈루 소득					
	조사 인원	신고 소득	결정 소득	소득 탈루율	평균 탈루 소득	수입금액 규모별	조사 인원	신고 소득	결정 소득	소득 탈루율	평균 탈루 소득	수입금액 규모별	소득 탈루율					
1억 이하	149	72.1	204.9	64.79%	0.89	1억 이하	188	78.9	278.5	71.68%	1.06	1억 이하	71.68%					
5억 이하	766	732.5	1,348.4	45.67%	0.80	5억 이하	944	724.5	1,605.1	54.86%	0.93	5억 이하	54.86%					
10억 이하	773	1,495.1	2,303.6	35.10%	1.05	10억 이하	885	2,344.8	3,382.2	30.67%	1.17	10억 이하	30.67%					
50억 이하	1,025	4,335.4	7,086.1	38.82%	2.68	50억 이하	1,333	5,224.0	8,335.5	37.33%	2.33	50억 이하	37.33%					
50억 초과	355	3,546.5	5,352.7	33.74%	5.09	50억 초과	274	5,289.4	7,030.5	24.76%	6.35	50억 초과	24.76%					
합계	3,068	10,181.7	16,295.6	37.52%	1.99	합계	3,624	13,661.6	20,631.8	33.78%	1.92	합계	33.7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2005년 12월 이후 착수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고소득 자영업자의 납세순응 실태를 보면, 소득탈루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나타냄
 - 2005년 12월부터 2011년 상반기 동안 착수된 기획세무조사 결과, 평균적인 소득탈루율은 45.6%이고, 2005년 착수된 조사의 경우 소득탈루율이 59.6%였으나 매년 낮아져서 2011년 상반기에 착수된 조사에서는 소득탈루율이 36.6%를 기록함
 - 그 동안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의 사용 활성화정책 등의 노력으로 세원이 노출됨에 따라 탈세의 기회가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소득탈루율을 하락시킬 여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는 <표 III-3> 참조

<표 III-3>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단위: 명, 억원, %)

조사 착수년	조사인원	부과세액	총소득 ①=②+③	신고소득 ②	적출소득 ③	소득 탈루율 ④=③/①
2005년	422	1,094	5,302	2,286	3,016	56.9
2006년	993	5,615	31,886	16,040	15,846	49.7
2007년	574	3,728	18,913	10,025	8,888	47.0
2008년	482	3,019	13,637	7,558	6,079	44.6
2009년	280	1,261	7,911	4,942	2,969	37.5
2010년	451	2,030	10,285	6,267	4,018	39.1
'11년 (상반기)	274	1,534	8,274	5,246	3,028	36.6
합계	3,476	18,281	96,208	52,364	43,844	45.6

자료: 오세재,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서 (1)』

- 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정리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과소납부 및 무납부로 인한 체납발생률이 최근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세금납부에 관한 납세순응이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함
 - 체납발생률이란 특정 연도분 체납발생액이 당해연도 총징수결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체납발생률: 2007년 8.6% → 2008년 8.8% → 2009년 9.5% → 2010년 9.6%
 - 국세청의 체납징수 활동으로 인해 매년 체납발생총액 중 대략 1/3 정도는 현금으로 징수되고 있어서 총징수결정액 중 대략 3% 내외 정도가 체납으로 미징수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으로 추측됨
 - 연도별 국세체납 발생 및 징수 실태에 관한 자료는 <표 III-4> 참조

<표 III -4> 연도별 국세체납 발생 및 징수 실적

(단위: 억원, %)

연도	총징수결정액		체납발생총액			현금정리 등의 징수실적			미징수 실적		
	계		당년발생	전년이월	현금정리	기타정리	소계	미정리 체납액	결손처분액	소계	
2007	1,701,136	187,051 (100.0)	146,481 (78.3) (8.6)	40,570 (21.7)	69,301 (37.0)	13,293 (7.1)	82,594 (44.1)	35,747 (19.1)	68,710 (36.7)	104,457 (55.8)	
2008	1,793,241	193,560 (100.0)	157,813 (81.5) (8.8)	35,747 (18.5)	71,061 (36.7)	13,842 (7.2)	84,903 (43.9)	39,080 (20.2)	69,577 (35.9)	108,657 (56.1)	
2009	1,760,107	206,685 (100.0)	167,605 (81.1) (9.5)	39,080 (18.9)	80,226 (38.8)	13,690 (6.6)	93,916 (45.4)	41,659 (20.2)	71,110 (34.4)	112,769 (54.6)	
2010	1,883,343	222,234 (100.0)	180,575 (81.3) (9.6)	41,659 (18.7)	81,469 (36.7)	14,736 (6.6)	96,205 (43.3)	49,257 (22.2)	76,772 (34.5)	126,029 (56.7)	

주: 첫 번째 () 안은 체납발생총액 중에서 해당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임. 당년발생 체납발생총액의 두 번째 () 안은 총징수결정액 대비 당년발생 체납총액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오세제, 『2011년 국세청 규정감사 수정안』.

- 앵겔곡선을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추정한 김봉근 등(2008)이나 박명호(2010)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는 연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대체로 40%대보다는 작은 수준이고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등의 자료를 통해 추정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 추이에 관한 자료는 <표 III-5> 참조

<표 III-5> 통계청 등의 자료를 통해 추정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 추이
(단위: %)

분석 연도	소득탈루율 중앙값	연구자	분석자료
2000	41.9	김봉근 등(2008)	노동패널
2001	20.8		
2002	49.9		
2003	23.7		
2004	24.8		
2005	32.0		
2006	28.7	박명호(2010)	가계조사
2007	23.8		
2008	24.3		

2. 납세순응행위의 결정요인 분석: 실험적 접근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현재의 재정 여건에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것은 중요함
 -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는 외부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의 확보가 요구됨

- 세입·세출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 조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세수를 증가시키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은 납세준응도를 제고하는 것임
- 납세준응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조세체계 및 조세행정은 물론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납세자들의 불준응행위는 조세체계의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에 나쁜 영향을 미침
 - 현실적으로 관측되는 납세준응도가 경제학 이론이 예측하는 수준보다 높은 현상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이론이 부재
- 한국조세연구원(2011)은 납세준응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납세준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새롭게 부각되는 실험적 접근 방식으로 납세준응행위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
 - 본 연구는 납세준응행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세정책 변수 외에도 세율체계 결정 방식의 차이가 납세준응도에 차별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 내용 및 결과

- 납세준응행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세정책 변수 외에도 세율체계 결정 방식의 차이가 납세준응도에 차별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았음
 - 전통적 접근방식에서는 세율, 적발확률, 가산세율과 같은 조세정책 변수 역할에 주목하였음
 - 본 연구는 비금전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세율체계 결정 방식의 역할에 주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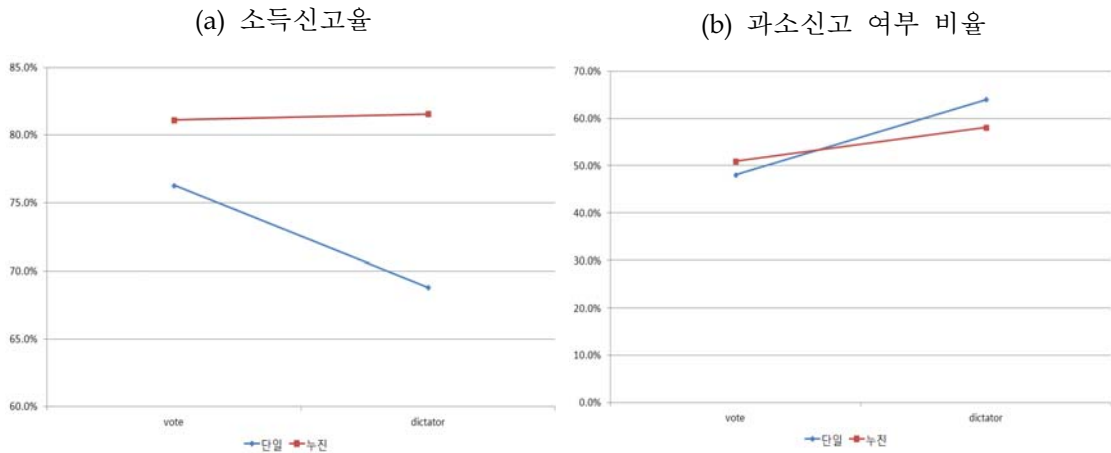
- 이론적 분석을 위하여 납세자의 효용이 금전적 요인은 물론 만족도 등의 비금전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모형을 상정하여 분석하였음
 - 이론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납세순응도에 대한 조세정책변수의 효과는 기대했던 방향과 일치하였음
 - 또한 비금전적 요인으로 포함된 만족도가 납세순응도의 수준 및 분포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음
 - 즉, 세정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납세순응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예측됨

- 세율결정방식의 차이와 이 요인의 세율체계 선호에 대한 상호작용이 납세순응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식별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 대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실험을 설계하여 진행하였음
 - 두 개의 세율구조(단일세 v.s. 누진세)와 두 가지 방식의 세율 결정방식(투표 v.s. 독재자)을 고려함
 - 실험참가자를 세율구조와 세율 결정방식에 따라 4개 집단으로 구분함
 - 실험참가자들이 선호하는 세율구조를 조사함
 - 세율구조, 세율 결정방식, 선호하는 세율구조의 차이에 따라 모두 8개의 집단으로 구분함
 - 따라서 각 집단별 납세순응도의 차이가 이질적인 실험/처치(treatment)의 효과로 간주될 수 있음

- 실험결과 참가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세율구조를 결정하였을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납세순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관측됨
 - 소득신고율은 7.5%p 높아지고, 과소신고자 비율은 15.9%p 감소함

- 다른 요인의 효과를 통제하여도 결과가 크게 영향 받지 않음

[그림 Ⅲ-1] 서울구조 · 선정방식별 소득신고율 및 과소신고 여부 비율



주: 소득신고율은 신고소득/실제소득으로 정의됨. 과소신고는 신고소득이 실제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정의함.

자료: 박명호·전병힐·조명환(2011)

다. 정책시사점

- 본 연구는 이론적 · 실험적 접근을 통해 절차적 민주성이라는 비금전적 요인이 납세자들의 순응행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줌
- 이러한 사실은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순응행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함
 - 국민들의 세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세목의 도입이나 세율 인상과 같은 주요한 세법개정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실질적인 의미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정치권에서 복지지출의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 방법으로 세법개정

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논의를 공론화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3.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가. 실험결과로부터의 시사점

-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서는 세율, 적발확률, 가산세율과 같은 조세정책 변수의 역할뿐 아니라 비금전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세율체계 결정 방식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세제 개편의 내용과 더불어 개편 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납세윤리·교육 및 홍보·서비스 강화 등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주는 비금전적인 요인 측면에서도 세정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

나. 납세순응도 측정모형 개발의 필요성

- 영국이나 미국 등의 세정 선진국처럼 납세순응도 측정모형 또는 조세격차 측정모형을 개발하여 성과지표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전반적인 납세순응도 및 개별 세목별·납세자 유형별·세원 유형별로 납세순응도를 계량화하여 납세순응 실태, 즉 납세위험 요인을 파악하여야 함
 - 납세순응도 측정을 위해서는 조세격차(tax gap)를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추정방법의 개발이 필요함
 - 조세격차의 추정을 통해 생성된 납세순응도 지수를 통해 납세순응을 제고하려는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다. 제도 측면의 개선방향

- 저비용·고효율을 추구하는 새로운 과세인프라 체계로 전환을 모색함
 - 과도한 조세운영비용을 유발하지만 그 효과에 한계가 있는 현행 실물거래 증빙중심의 과세인프라로부터 금융거래자료, 고액현금거래보고자료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과세인프라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동시에 과세당국에 개인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세금을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하는 납부불성실 행위에 대해서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됨
 - 소액·단순 체납사건에 대해서는 미국식 자동징수프로그램(Automated Collection System)을 벤치마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임
 -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IV. 결 론

- 2007년 현재 우리나라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에 의한 총납세협력비용은 약 7.01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의 감축은 경제의 장기적인 효율성과 성장률 및 노동생산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기대됨

- 국세청은 현재 납세협력비용의 감축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납세협력비용 감축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제도적·행정적 측면에서도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 소득탈루율과 세금체납률이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현재 조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세수를 증가시키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은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것임

- 한국조세연구원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조세정책 변수와 더불어 개편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서 납세윤리·교육 및 홍보·서비스 강화 등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주는 비금전적인 요인 측면에서도 세정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국세청, 보도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e 稅路」도 정식개통」, 2009.12.30.
- 박명호·전병힐·조명환, 『납세순응행위의 결정요인 분석: 실험적 접근』, 한국조세연구원, 2011.
- 박명호·정재호,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측정』, 한국조세연구원, 2008.
- 오제세, 『2011년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서(1)』, 2011.
- OECD, *Programs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Tax Regulations in Selected Countries*, 2008.

제2주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10년 : 평가와 과제

2012. 3. 6

김재진

목 차

I. 서론	55
II.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의 개요와 변천과정	57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57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	59
3.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제도	60
4.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61
5. 신용카드 이용실적	62
III.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의 과표양성화 및 세수효과	65
1. 과표양성화 효과	65
가. 국세와 종소세신고분(자영업자) 탄성치 비교를 통한 추정	66
나. 국세와 부가가치세 탄성치 비교를 통한 추정	67
다. 종소세신고분(자영업자)과 원천분(근로소득자) 탄성치 비교를 통한 추정	70
2. 세수효과	72
가. 납세인원 및 징수세액	72
나. 종합소득세	73
다. 부가가치세	77
IV.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의 사회적 비용	88
1.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88
2. 조세지출 비용	89
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90
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	91
다.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제도	92
라.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93

3. 신용불량자 관련 사회적 비용	94
4. 요약	94
V.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97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편중현상	97
가.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97
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98
2. 고비용 신용카드 거래의 편중	99
3. 가맹점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101
가. 가맹점수수료율 수준	101
나. 가맹점수수료 인하 추이	104
4. 가맹점수수료 편차의 적정성	104
가. 가맹점수수료율 편차 현황	104
나. 가맹점수수료율 편차의 원인	106
VI. 정책과제	108
1.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108
2. 직불카드/체크카드 활성화	111
가. 직불카드 활성화로 가맹점수수료 절감	111
나. 직불카드의 장점	115
다. 정책대안	116
3. 경쟁체제 확보	117
가. 현행 비경쟁적 수수료 결정체계의 문제점	117
나. 카드채권매입업무와 카드발급업무를 구분하여 경쟁체제 확보	119
다. 호주의 사례	120
4.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122
참 고 문 헌	126

표목차

<표 II-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변천과정 ¹⁾	58
<표 II-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 변천 과정	59
<표 II-3>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변천 과정	61
<표 II-4> 연도별 신용카드 사용비율 추이	63
<표 II-5> 인구 구조와 신용카드 발급 수 및 가맹점 수	64
<표 III-1> 국세 및 부가가치세·종소세 신고분(자영업자) 탄성치의 비교	68
<표 III-2> 각 지표별 연도별 추이	69
<표 III-3> 자영업자(종소세 신고분)와 근로소득자(원천분)의 소득세 탄성치 비교	71
<표 III-4>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74
<표 III-5> 연도별 기장신고비율의 추이	76
<표 III-6> 연도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신고인원	78
<표 III-7> 연도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과세표준	80
<표 III-8> 과세인원비율 및 간이과세자 비율 추세	81
<표 III-9> 일반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신고인원 현황	84
<표 III-10> 일반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과세표준 신고현황	85
<표 III-11> 간이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신고인원현황	86
<표 III-12> 간이사업자 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 과세표준 신고현황	87
<표 IV-1>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 부담 추정액	89
<표 IV-2>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이	90
<표 IV-3> 일반사업자 카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92
<표 IV-4> 수익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추이	93
<표 IV-5> 연도별 신용카드영수증 당첨금 지급현황	93
<표 IV-6> 1997~2003년 신용불량자 추이	94
<표 IV-7> 신용카드 거래의 사회적 비용	95

<표 V-1>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97
<표 V-2>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98
<표 V-3>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액수 및 거래건수 추이	100
<표 V-4> 업종별 신용카드 평균 가맹점수수료율(2012년 1월 31일 기준)	101
<표 V-5> 우리나라의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103
<표 V-6>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추이	104
<표 V-7>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편차 비교(2012년 1월 31일 기준)	105
<표 VI-1> 신용카드거래를 직불카드로 대체시 가맹점수수료 절감 추정액	114
<표 VI-2> 지급수단별 사회적비용	115
<표 VI-3> 호주 카드사별 가맹점수수료 추이	121

그림목차

[그림 III-1] 카드회사, 카드회원 및 가맹점 3자간의 거래관계와 구조	65
[그림 III-2] 기간별 국세 및 부가가치세·종소세신고분(자영업자) 탄성치의 비교 ...	66
[그림 III-3] 각 지표별 연도별 추이	70
[그림 III-4] 종소세 신고분(자영업자)과 원천분(근로소득자)의 탄성치 비교	71
[그림 III-5]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추이	73
[그림 III-6]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추이	75
[그림 III-7] 과세인원비율 및 간이과세자 비율 추세	82
[그림 IV-1]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의 누적 사회적 비용	96
[그림 V-1] 주요국의 카드거래 가맹점 수수료율	103
[그림 VI-1] 연도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부담 추정액	112
[그림 VI-2]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부담 누적 추정액	112
[그림 VI-3] 신용카드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조세지출규모(복권금액 포함)	113
[그림 VI-4] 신용카드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 누적 총액(복권금액 포함)	113
[그림 VI-5] 「3-당사자」체제에서 신용카드 거래흐름 및 수수료 발생 시점	119
[그림 VI-6] 「4-당사자」체제에서 신용카드 거래흐름 및 수수료 발생 시점	120

I. 서론

-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세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과세할 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게 되고 사회계층 간 화합이 가능함
 -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함
 -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각자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음
 - 국민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완수하게 하려면, 우선 정부가 국민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함

-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현금거래의 관행이 뿌리 깊어 공평과세의 구현에 큰 장애물이 되어 왔으나, 국민의 교육과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형평과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함
 - 과거에는 조세를 경제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식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부담의 형평성이나 조세정의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측면이 있었음
 - 1990년대 말까지도 봉급생활자의 과표양성화율은 원천징수제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나,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은 대략 30~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정부는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도입하였음
 - 1999년 9월부터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였고, 2000년 1월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함

-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의 제고와 소비자의 지불결제방법 등 우리 사회의 다방면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옴

- 정부의 의도대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이 빠르게 제고되어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봉급생활자와의 세부담 형평성문제도 크게 개선됨
- 소비자들의 지불결제수단도 과거는 현금 위주였으나 지금은 신용카드가 가장 중요한 지불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음
 -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도입되기 전인 1998년에는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약 63조 5,500억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약 493조 8,300억원으로 7.8배 증가함

-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제고를 통한 세수수입 등 긍정적 정책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음
 -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2000~2010년에 지불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71조 9,229억원으로 추정됨
 - 정부가 2000~2010년에 부담한 조세지출 비용은 약 19조 2,729억원으로 추정됨

-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이익 극대화만 추구하는 카드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하여 신용불량자 양성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카드사간 과당경쟁, 소비자들의 충동구매 등으로 인하여 2003년 소위 '카드대란'이 발생하였음
 -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정비하지 않아서 신용카드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함

-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추진한 지 10년이 경과한 지금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고, 그동안 우리사회가 지불한 비용과 문제점을 따져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II.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의 개요와 변천과정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¹⁾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하여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시키기 위하여 1999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²⁾의 근거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임
 - 도입 당시 1999년 9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였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정책목적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화와 새로운 공제제도로 인한 세입손실의 급격한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제대상 제외기준과 공제한도 등을 도입하였음
 - 공제율과 공제한도금액은 경제환경과 소비자의 지불결제수단 결정 등을 고려하여 지난 10년간 변천되고 있음
 - 현재의 공제한도는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있음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거래투명화 효과의 기여 여부에 따라 설정되었음³⁾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2) 거래수단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거래수단인 신용카드와 함께 직불카드도 포함하였음

3)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거래행위는 거래투명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표 II-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변천과정¹⁾

시행연도	변천 내용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 금액) ○ 공제율: 연간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10% 소득공제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한도 또는 총급여액의 10% 중 적은 금액 ○ 일몰기한: 1999.9.1부터 2002.11.30까지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연간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20%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2001.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한도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2001.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여신전문금융법상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30%로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2002.12.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일몰기한: 2002.12.1부터 2005.11.30까지 연장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직불카드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20%로 통일 (종전 직불카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2004.1.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15%로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시기: 2004.12.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연간 총급여액의 15% 초과금액의 15% ○ 일몰기한: 2005.12.1부터 2007.11.30까지 연장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소득공제대상 보완(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006.12.1부터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연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의 20% ○ 일몰기한: 2008.1.1.부터 2009.12.31까지 연장(단, 2008년 과세기간에는 2007.12.1부터 2008.12.31까지의 지출분을 공제받게 됨)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20%(단,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는 25%) ○ 공제한도 :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 일몰기한: 2010.1.1.부터 2011.12.31까지 연장

주: 1. 2011년말 세법개정으로 체크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로 상향조정.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공제율 30% 적용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한도로 1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도 2014.12.31까지 3년 연장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4)

- 정부는 1993년도 세법개정에서 신용카드 매출증가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
 -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이 증가하면 과표가 노출되어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를 회피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
 - 동 제도는 199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 당시 세액공제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었음
 - 적용대상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일반사업자로 한정되었으며 법인은 제외함

<표 II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 변천 과정

시행연도	변천 내용
1994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 0.5%
1996	○ 공제율 1%로 상향조정
1998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대상에 직불카드 포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1999	○ 공제한도(300만원) 신설 ※ 1996년에 신설된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규정 이후 1998년 개정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조특법 122조로 이전
2000	○ 공제율 2%로 인상 ○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대상 업종 명확화
2004	○ 공제율 1%로 축소
2005	○ 공제율: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 부가가치세 공제율 인상 1.5%
2006	○ 영수증 교부대상을 일반사업자에서 모든 일반과세자로 확대 - 여객운송업, 목욕이발미용업, 입장권발행사업자 등의 업종은 제외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표 II-2> 계속

시행연도	변천 내용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인상: 간이과세자중 음식숙박업 일부 업종 부가가치세 공제율 인상 2% ○ 성실사업자(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신설(2010년말까지)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인상: 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 일몰기한: 2010년말까지 한시 적용 ○ 공제한도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 2012년말까지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숙박업 영위간위과세자 2.6%, 기타 일반사업자 1.3%, 공제한도 7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게 대한 당첨금제도 폐지 ○ 성실사업자(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 일몰기한: 2012년말까지 연장

3.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제도⁵⁾

-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제도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및 세원 노출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1997년 도입함
- 동 제도는 사업자의 전년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이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5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이 제도는 1999년 9월에 시행된 소비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가맹사업자가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는 신용카드를 수수함으로 인해 증가하는 소득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신용카드거래 활성화효과를 거둠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표 II-3>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변천 과정

시행연도	변천 내용
1997	○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 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세액공제 ○ 일몰기한: 2003년말까지
2001	○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방식 변경 - 기존방식(매출액 증가분의 50% 소득세 세액공제)과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20%에 상당하는 소득세 세액공제방식 중 선택
2003	○ 공제금액(매출액의 10%) 축소
2004	○ 공제율을 5%로 축소 ○ 일몰기한: 2006년말까지 연장
2007	○ 일몰기한: 2008년말까지 연장
2009	○ 일몰기한: 2010년말까지 연장
2011	○ 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폐지 - 적용시기: 2011.1.1 이후 발생하는 수입금액부터

4.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는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거래 영수증을 추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와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됨
 - 1999년에 도입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미미한 저소득 계층의 참여유인이 떨어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통하여 납세자가 느끼는 소득세 감면혜택의 체감효과가 낮을 수 있음
 - 신용카드 거래가 미미한 계층들의 신용카드 사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를 시행한 것임

- 영수증 복권제도는 카드 사용자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복권제도도 병행되었음
 -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복권제도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민간단체인 ‘여신금융협회’에서 주도하였으며 그 지원도 담당함

-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 정도에 따라 변화하였고,
 - 2005년 1월 신용카드거래가 이미 안정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함에 따라 신용카드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를 먼저 폐지하고,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복권제도만 운영함
 - 2010년 1월 1일부터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분도 복권추첨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현금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는 2010년까지 남겨두었다가 2011년 1월 폐지되어 우리나라의 영수증 복권제도는 모두 폐지되었음

5. 신용카드 이용실적

-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0년도 기준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민간소비지출의 46.8%인 약 288조원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2000년의 12.3%에 비하여 크게 높아진 수준으로 1999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정책 시행 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표 II-4> 연도별 신용카드 사용비율 추이

(단위: 천억원, %)

연도	신용카드 이용금액	민간소비지출	신용카드 사용비율
1999	245.8	2,899.6	8.5
2000	404.8	3,303.9	12.3
2001	643.7	3,642.5	17.7
2002	1,518.9	4,087.2	37.2
2003	1,417.1	4,201.0	33.7
2004	1,425.9	4,350.6	32.8
2005	1,586.1	4,654.3	34.1
2006	1,758.4	4,949.2	35.5
2007	2,008.4	5,302.6	37.9
2008	2,300.9	5,616.3	41.0
2009	2,524.1	5,774.0	43.7
2010	2,880.6	6,154.0	46.8

주: 신용카드 금액은 개인사용액 중 판매와 할부금액의 합계
 자료: 한국은행; 여신금융협회, 각 연도

- 신용카드 발급 수는 1999년 3,899만매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총 1억 1,658만매의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남
 - 신용카드 발급 수와 경제인구 1인당 카드소지 매수의 꾸준한 증가는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보편화되었음을 나타냄
 - 특히, 1999년 이후의 카드 발급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 그러나 2002년 신용카드 대란 발생 후 몇 년간 카드 발급수가 감소하기도 함

-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카드소지 매수는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정책이 시행된 1999년 1.8매였으나 그 이후 2010년 4.7매로 크게 증가함
 - 국세청이 1999년 3월과 9월, 2005년 5월 등 3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를 추진한 결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는 2000년도 861만점에서 2010년에는 1,767만점에 이르고 있음⁶⁾

<표 II-5> 인구 구조와 신용카드 발급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천명, 천매, 천점, %)

구분	추계인구 (천명)	경제활동 인구 (천명)	카드 수 (천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		가맹점 수 (천점)	
				수	전년대비 증가율	수	전년대비 증가율
1999	46,617	21,666	38,993	1.8	-10.0	6,192	33.2
2000	47,008	22,134	57,881	2.6	44.4	8,611	39.1
2001	47,353	22,471	89,330	4	53.8	12,627	46.6
2002	47,615	22,921	104,807	4.6	15.0	15,612	23.6
2003	47,849	22,957	95,517	4.1	-10.9	16,949	8.6
2004	48,082	23,417	83,456	3.6	-12.2	16,808	8.6
2005	48,294	23,743	82,905	3.5	-2.8	16,124	-5.7
2006	48,497	23,978	91,149	3.8	8.6	17,037	5.7
2007	48,692	24,216	89,565	3.7	-2.6	14,701	-13.7
2008	48,606	24,347	96,248	4.0	8.1	15,612	6.2
2009	48,747	24,394	106,993	4.4	10.0	16,568	6.1
2010	48,874	24,748	116,589	4.7	6.8	17,699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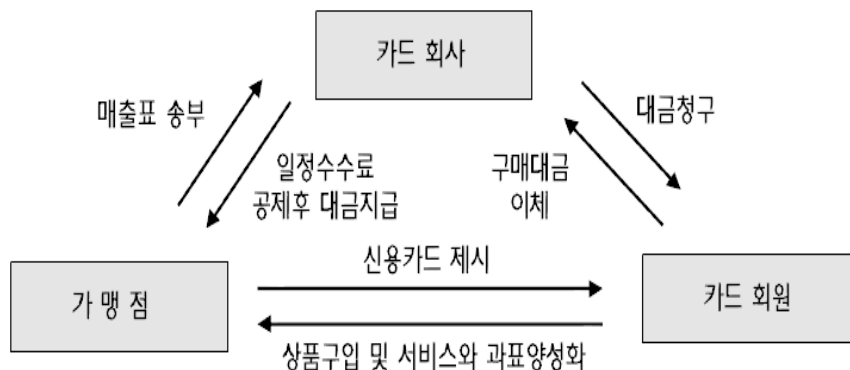
자료: 여신금융협회

6)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지급결제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가맹점 수가 감소한 이유는 카드사 합병으로 인해 중복 가맹점이 제외되고 일부 카드사에서 실적이 없는 가맹점 및 발급 카드를 2007년 중 일괄적으로 통계에서 제외했기 때문임

Ⅲ.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의 과표양성화 및 세수효과

- 신용카드거래는 카드회사, 가맹점, 카드회원 등 3자간의 상호 검정 및 견제기능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매출규모와 소득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므로 과세투명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림 Ⅲ-1] 카드회사, 카드회원 및 가맹점 3자간의 거래관계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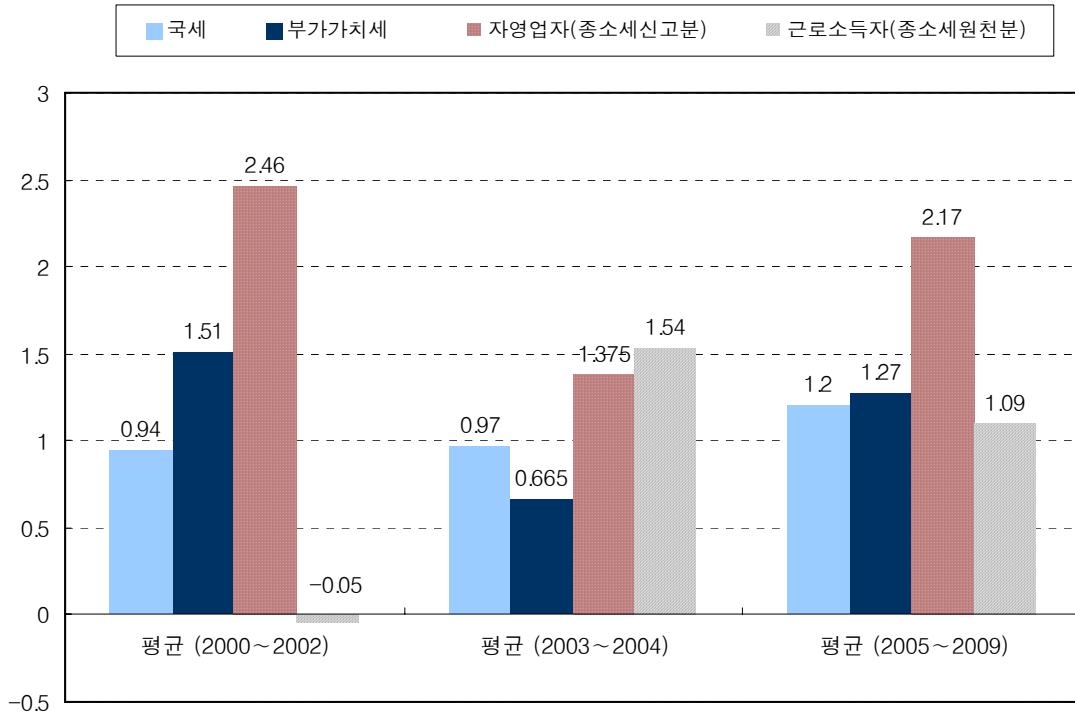
1. 과표양성화 효과

- 2000~2002년은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정착되기 시작한 시기로 동 기간의 국세탄성치는 0.94로 1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부가가치세의 탄성치⁷⁾는 각각 2.46과 1.51로 나타났음
 - 일반적으로 국세탄성치가 1보다 낮은 경우 국세수입의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동 기간 동안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분탄성치는 2.46을 나타낸 반면,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원천분은 -0.05를 나타냄
 - 또한,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분 탄성치는 1999~2009년 연평균 1.79를

7) 조세탄성치는 세수입의 성장률과 국민소득의 성장률의 비율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걸리면 탄성치가 1보다 크고, 경제성장률과 조세수입 성장률이 같으면 1.0으로 나타남

기록한 반면, 동기간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원천분의 평균 탄성치는 0.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음

[그림 III-2] 기간별 국세 및 부가가치세·종소세신고분(자영업자) 탄성치의 비교



가. 국세와 종소세신고분(자영업자) 탄성치 비교를 통한 추정

- 종합소득세 신고분의 탄성치를 통하여 본 신용카드 과세표준 양성화효과에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도입되어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2000~2002년 동안의 지표들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즉, 이 기간 동안 명목GDP성장률은 <표 III-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3년 평균 9.29%로 나타났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분 증가율은 3년 평균 26.6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이는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민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2년에는 42.6%에 이르게 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세원이 노출되어 과표양성화율이 제고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표 III-1>의 2005~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분의 5년 평균 탄성치는 2.17로 이는 동 기간 국세탄성치 평균 1.20에 비하여 약 1.8배 높은 수준임
- 기간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2005~2009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탄성치는 2003~2004년 1.38에서 2.17로 크게 증가함
 - 이는 2000년 이후로 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자영업자의 소득과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세원이 노출되고 동시에 2005년 현금영수증 도입으로 인한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세원 양성화의 결과라고 추정됨
 - 2007년에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분의 탄성치가 5.03을 기록하여 현금영수증 제도가 자영업자의 소득과약 수준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그러나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탄성치는 -4.38로 급감해 자영업자의 소득은 금융위기의 여파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나. 국세와 부가가치세 탄성치 비교를 통한 추정

- 2000~2002년 평균 부가가치세의 탄성치는 1.51로 동 기간의 국세탄성치 0.9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도입되어 정착되기 시작한 2002년의 부가가치세 탄성치는 2.11로 이는 2002년 국세탄성치 0.81보다 약 2.6배 높은 수치임
- 2002년의 부가가치세 세수증가율은 2001년 대비 22.5% 증가하였으며, 이는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인하여 2002년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양성화되어 부가가치세 세수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탄성치는 2003년 경우 각각 0.90으로 국세탄성치 1.59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
 - 2003~2004년 신용카드대란 등의 사회문제로 인하여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감소하면서 민간소비지출, 부가가치세 세수, 종합소득세 증가율이 2000~2002년에 비하여 크게 둔화되었음

□ <표 III-1>의 2005~2009년 부가가치세의 5년 평균 탄성치는 1.27을 기록하여, 동 기간 국세탄성치 평균 1.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09년에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탄성치가 1.93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바, 이는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인한 과세표준양성화효과의 정착으로 부가가치세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표 III-1> 국세 및 부가가치세·종소세 신고분(자영업자) 탄성치의 비교

(단위: 천억원)

연도	국세		부가가치세		종소세(신고분)	
	금액	탄성치	금액	탄성치	금액	탄성치
2000	929	1.63	232	1.00	43	1.52
2001	958	0.39	258	1.41	55	3.44
2002	1,040	0.81	316	2.11	69	2.43
2003	1,147	1.59	334	0.90	72	0.69
2004	1,178	0.35	346	0.43	83	2.06
2005	1,275	1.78	361	0.97	91	1.98
2006	1,380	1.64	381	1.09	128	8.12
2007	1,615	2.33	409	1.03	175	5.03
2008	1,673	0.68	438	1.33	134	-4.38
2009	1,645	-0.45	470	1.93	135	0.08
평균 (2000~2002)	976	0.94	269	1.51	56	2.46
평균 (2003~2004)	1162.5	0.97	340	0.665	77.5	1.375
평균 (2005~2009)	1,518	1.20	412	1.27	133	2.17

자료: 국세통계연보; 한국은행, 각 연도

<표 III-2> 각 지표별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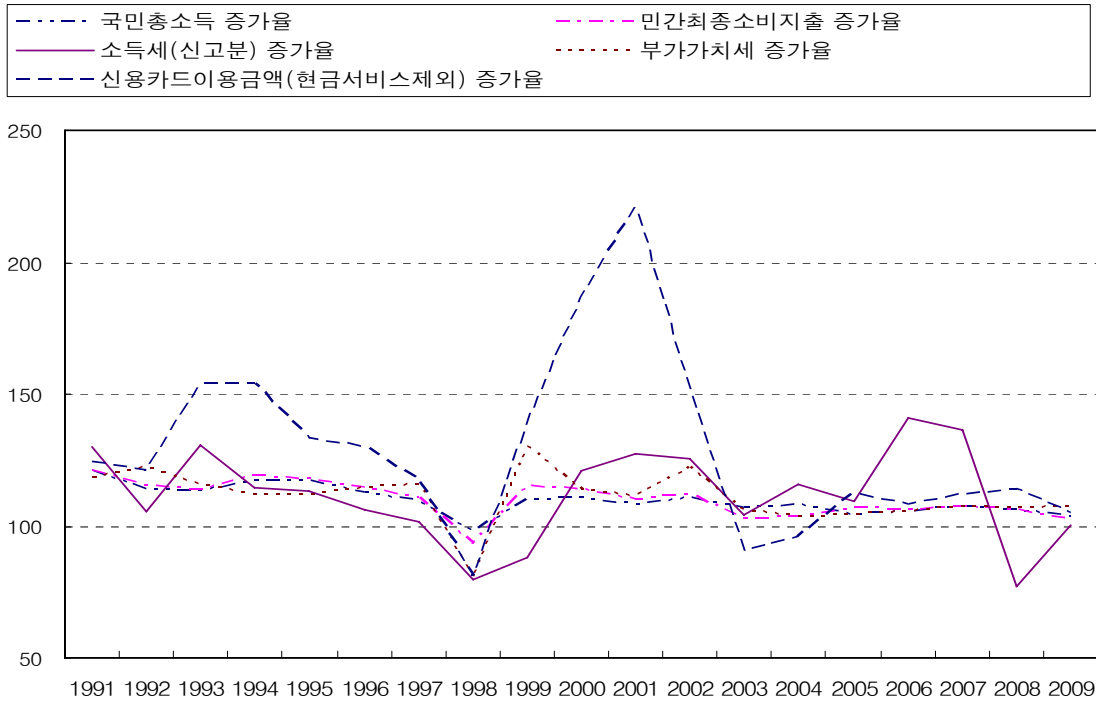
(단위: 천억원, %)

구분	명목GDP		민간 소비지출		신용카드 이용실적		현금영수증 이용실적		부가가치세 세수		종합소득세수 (신고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2000	6,032	13.9	3,303.8	13.9	795.9	86.7	-	-	232	13.7	43	22.9
2001	6,514	8.0	3,642.5	10.3	1,757.1	120.8	-	-	258	11.2	55	27.9
2002	7,205	10.6	4,087.1	12.2	2,652.1	50.9	-	-	316	22.5	69	25.5
2003	7,671	6.5	4,200.9	2.8	2,410.9	-9.1	-	-	334	5.7	72	4.3
2004	8,269	7.8	4,350.6	3.6	2,302.4	-4.5	-	-	346	3.6	83	15.3
2005	8,652	4.6	4,654.3	7.0	2,185.8	-5.1	19	-	361	4.3	91	9.6
2006	9,087	5.0	4,949.1	6.3	2,767.0	26.6	31	64.52	381	5.5	128	40.7
2007	9,750	7.3	5,302.6	7.1	3,124.1	12.9	50	64.38	409	7.3	175	36.7
2008	10,265	5.3	5,616.2	5.9	3,565.4	14.1	62	22.47	438	7.1	134	-23.4
2009	10,650	3.8	5,759.7	2.6	3,729.5	4.6	69	11.69	470	7.3	135	0.7
연평균증가율 (2000~2002)	9.29		11.22		82.54		-		16.71		26.67	
연평균증가율 (2003~2004)	7.80		3.56		-4.50		-		3.59		15.28	
연평균증가율 (2005~2009)	5.33		5.47		14.29		38.05		6.82		10.36	
연평균증가율 (2000~2009)	6.52		6.37		18.72		38.05		8.16		13.56	

주: 현금영수증제도는 2005년도에 처음 도입됨
 자료: 국제통계연보, 각 연도; 여신금융협회, 각 연도

[그림 Ⅲ-3] 각 지표별 연도별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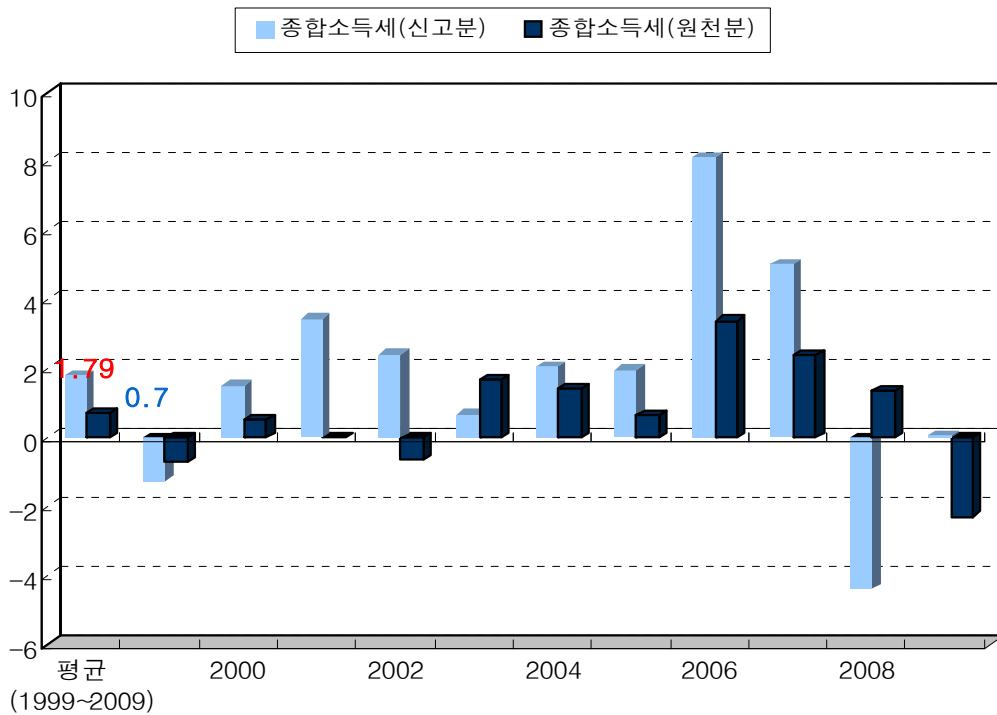
다. 종소세신고분(자영업자)과 원천분(근로소득자) 탄성치 비교를 통한 추정

-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도입된 1999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탄성치는 1.79를 기록하여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탄성치 0.7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카드거래를 통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의 효과로 종합소득세 신고분의 탄성치와 종합소득세 원천분의 탄성치 격차는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도입된 2000년대 초반과 2005년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되어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세원 노출이 가속화된 2006~2008년 사이에 더욱 확대되었으며, 1999~2009년 동안의 그 차이는 평균 2.41로 나타남

<표 III-3> 자영업자(종소세 신고분)와 근로소득자(원천분)의 소득세 탄성치 비교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분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원천분 (근로소득자)	차이
1999	-1.27	-0.70	0.57
2000	1.52	0.53	0.99
2001	3.44	-0.02	3.46
2002	2.43	-0.65	3.08
2003	0.69	1.66	0.97
2004	2.06	1.41	0.65
2005	1.98	0.65	1.33
2006	8.12	3.38	4.74
2007	5.03	2.38	2.65
2008	-4.38	1.36	5.74
2009	0.08	-2.30	2.38
평균	1.79	0.70	2.41

[그림 III-4] 종소세 신고분(자영업자)과 원천분(근로소득자)의 탄성치 비교



2. 세수효과

가. 납세인원 및 징수세액

- 납세인원은 경제규모 확대, 사업자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실적의 증가로 인한 과세표준양성화로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납세인원은 2000년 약 754만명에서 2009년에는 67.9%가 증가한 약 1,266만명이 되었으며, 1999년 이후로 연평균 6.26%씩 증가하였음

- 또한, 국민총소득 증가로 인한 민간최종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이용비율의 증가로 자영업자의 세원이 양성화됨에 따라 2000년 이후 내국세 수입실적은 연평균 7.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종합소득세는 199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 이후로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효과 및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수실적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부가가치세 세수실적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7년 이후 연도별로 전년 대비 7%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

-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시행 이후의 2000~2009년 동안의 주요 세목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8.2%, 법인세, 종합소득세가 각각 7.8%로 나타남
 - 종합소득세를 신고분(근로소득)과 원천분(자영소득)으로 구분해 보면, 2000~2009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연평균 13.6%, 원천분이 5.2% 증가하였음
 - 이는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자영업자의 세원이 파악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원천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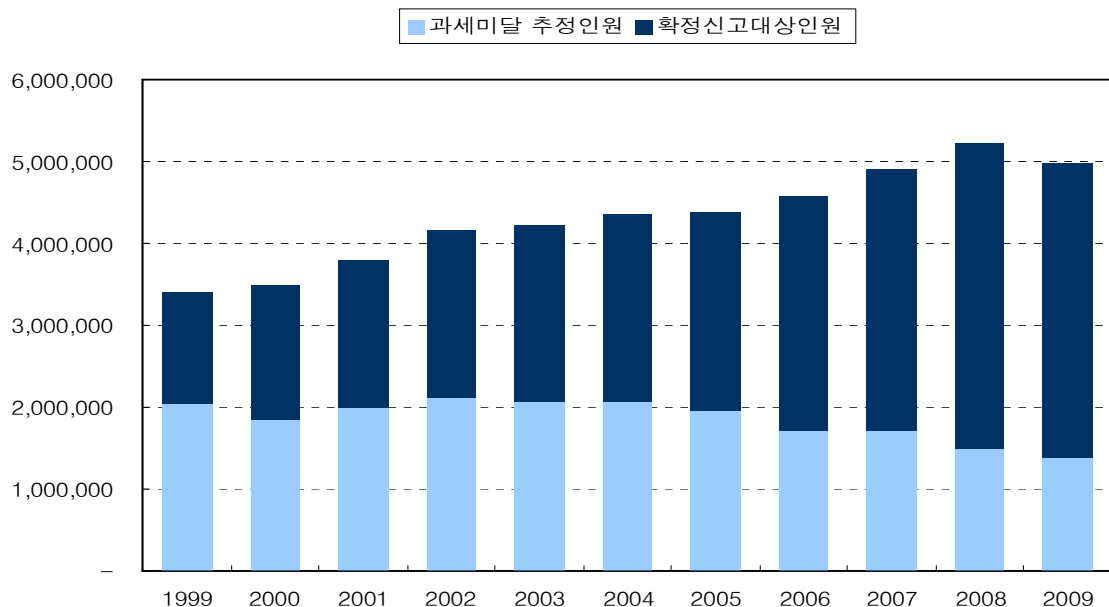
나. 종합소득세

1) 신고인원의 증가

- 종합소득세 납세인원⁸⁾은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9년 340만명에서 2009년 497만명으로 약 46%가 증가함
- 납세인원이 1999~2009년 동안 연평균 3.85%씩 증가하고 확정신고 대상인원도 연평균 10.23% 증가한 반면, 과세미달 추정인원은 연평균 3.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납세인원 대비 확정신고 대상인원의 비중은 1999년 39.9%에 비하여 2009년에는 72.5%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 납세인원대비 과세미달 추정인원은 1999년 60.1%에서 32.6%p 하락하여 2009년에는 27.5%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그림 III-5]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추이

(단위: 명)



8) 납세인원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비사업자는 제외됨

□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은 357만명으로 2000년 162만명에 비하여 121% 증가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⁹⁾ 중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인원은 2000년 67만 9천명에서 2009년에는 191%가 증가한 198만 3천명으로 크게 확대되었음

○ 특히, 2000년 귀속 확정신고인원은 1999년에 비하여 무려 20.42%나 증가하였으며, 가장신고인원도 2000년에는 1999년 대비 18.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인하여 세원 노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소비자 대상 현금수입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소득과익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영업자의 신고율이 제고되었다고 판단됨

<표 III-4>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명, %)

구분	확정신고인원							
	합계	전년 대비	기장 신고인원	전년 대비	추계 신고인원	전년 대비	비사업자	전년 대비
1997	1,299,442	4.17	504,933	9.63	769,726	0.60	24,783	14.20
1998	1,225,614	-5.68	495,045	-1.96	717,950	-6.73	12,619	-49.08
1999	1,342,153	9.51	572,904	15.73	748,762	4.29	20,487	62.35
2000	1,616,244	20.42	679,536	18.61	856,124	14.34	80,584	293.34
2001	1,782,369	10.28	790,224	16.29	950,665	11.04	41,480	-48.53
2002	2,010,363	12.79	918,803	16.27	1,023,137	7.62	68,423	64.95
2003	2,114,527	5.18	1,018,068	10.80	1,012,943	-1.00	83,516	22.06
2004	2,235,905	5.74	1,143,900	12.36	989,294	-2.33	102,711	22.98
2005	2,279,497	1.95	1,230,024	7.53	965,662	-2.39	83,811	-18.40
2006	2,736,478	20.05	1,394,979	13.41	1,221,082	26.45	120,417	43.68
2007	3,074,419	12.35	1,585,023	13.62	1,315,235	7.71	174,161	44.63
2008	3,584,432	16.59	1,865,279	17.68	1,527,664	16.15	191,489	9.95
2009	3,570,816	-0.38	1,983,143	6.32	1,353,158	-11.42	234,515	22.47
연평균증가율 (1999~2009)	10.28%		13.22%		6.10%		27.61%	

주: 1. 납세인원은 분리과세소득자,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됨

2. 확정신고인원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로서 과세미달자와 비사업자로서 과세미달자는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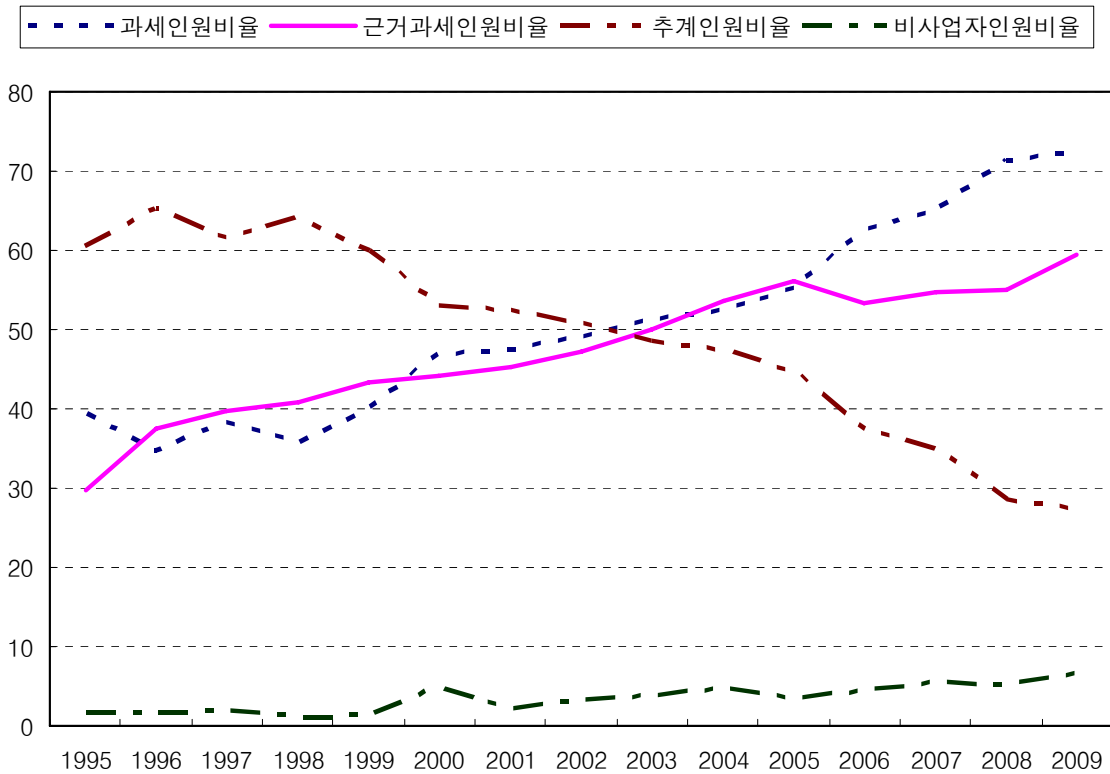
3. 비사업자는 사업소득·부동산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를 말함

자료: 국세통계연보, 2010.

9) 개인사업자는 크게 기장신고자와 추계신고자로 구분되며, 기장신고자는 외부조정, 자기조정, 간편장부 신고자, 추계신고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구분함

[그림 III-6]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추이

(단위: %)



2)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 비중의 증가

-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통하여 자영업자의 소득과약을 위한 과세인프라가 확충되고, 간편장부제도의 도입, 무기장가산세의 인상 등의 기장 확대 노력으로 인하여 기장신고인원¹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은 2009년 약 357만명으로 1999년 약 134만명에서 166%가 증가하였으며, 기장신고인원도 1999년 약 57만명에서 2009년에는 약 198만명으로 246%나 증가함
 - 특히, 200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 약 357만명 중 약 55.5%에 해당하는

10)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중 장부기장이 필요 없는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자를 제외한 인원 중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등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신고한 인원을 말함

- 198만명이 장부, 증빙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추계에 의한 신고인원은 1999년 75만명에서 2009년에는 135만명으로 81%가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오히려 1999년 55.8%에서 37.9%로 17.9%p 하락함

- 과세당국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과 기장 확대 노력에 의하여 기장신고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 43.35%에 불과했던 기장신고비율이 2009년에는 16.09%p 증가한 59.44%로 나타남
 - 또한, 국세통계연보에서 통계가 생산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의 업태별 기장신고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업태에 대한 평균 기장신고비율이 2006년 53.32%에서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59.4%로 나타남
 -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현금수입업종이라 할 수 있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의 기장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서비스업의 2009년 기준 기장신고율은 2006년 29.87%에서 13.83%p 증가한 43.7%에 이르고 있음
- 이는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의 정착 및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기장 확대를 위한 노력 등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영향으로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되어 근거과세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III-5> 연도별 기장신고비율의 추이

(단위: 명, %)

연도	확정신고인원 (A)	비사업자 (B)	기장대상인원 (C=A-B)	기장신고인원 (D)	기장신고비율 (F=D/C)
1999	1,342,153	20,487	1,321,666	572,904	43.35
2000	1,616,244	80,584	1,535,660	679,536	44.25
2001	1,782,369	41,480	1,740,889	790,224	45.39
2002	2,010,363	68,423	1,941,940	918,803	47.31
2003	2,114,527	83,516	2,031,011	1,018,068	50.13

<표 III-5> 계속

연도	확정신고인원 (A)	비사업자 (B)	기장대상인원 (C=A-B)	기장신고인원 (D)	기장신고비율 (F=D/C)
2004	2,235,905	102,711	2,133,194	1,143,900	53.62
2005	2,279,497	83,811	2,195,686	1,230,024	56.02
2006	2,736,478	120,417	2,616,061	1,394,979	53.32
2007	3,074,419	174,161	2,900,258	1,585,023	54.65
2008	3,584,432	191,489	3,392,943	1,865,279	54.98
2009	3,570,816	234,515	3,336,301	1,983,143	59.44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다. 부가가치세

1)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의 증가

-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및 현금영수증 제도 등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세당국의 다양한 정책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2009년 총 512만명으로 2000년 339만명보다 173만명 늘어나 51.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연평균 4.6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 기간 중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2000년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전년 대비 13.1% 증가하였음

- 연도별·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일반사업자는 1999년 35.3%에서 53.5%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법인사업자도 7.75%에서 10.1%로 소폭이지만 증가하였음
 - 반면, 간이과세자는 신고인원 비중이 오히려 1999년 56.9%에서 2009년에는 36.4%로 20.5%p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신고인원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인사업자는 2000년 약 28만 명 대비 86.4% 증가하여 2009년 약 52만명, 일반사업자는 2009년 약 274명으로 2000년 약 144만명 대비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신고인원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간이과세자는 2009년에는 약 186만명으로 2000년 약 167만명 대비 11% 늘어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음
-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신고인원의 2000~2009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법인사업자는 7.17%, 일반사업자는 7.39%로 나타나 부가가치세 전체 신고인원 연평균 증가율인 4.69%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간이과세자의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에는 1.23%에 불과하여 전체 신고인원 연평균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함

<표 III-6> 연도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신고인원

(단위: 명, %)

연도	계		법인		일반(개인)		간이(개인)	
	인원	전년대비 증감률	인원	전년대비 증감률	인원	전년대비 증감률	인원	전년대비 증감률
1999	2,998,956	5.0	232,474	17.9	1,059,109	8.2	1,707,373	1.7
2000	3,390,772	13.1	278,657	19.9	1,442,987	36.2	1,669,128	-2.2
2001	3,709,035	9.4	321,204	15.3	1,573,217	9.0	1,814,614	8.7
2002	3,963,454	6.9	345,292	7.5	1,774,268	12.8	1,843,894	1.6
2003	3,994,665	0.8	359,154	4.0	1,861,707	4.9	1,773,804	-3.8
2004	3,942,247	-1.3	372,041	3.6	1,924,877	3.4	1,645,329	-7.2
2005	4,123,306	4.6	400,476	7.6	2,119,167	10.1	1,603,663	-2.5
2006	4,260,946	3.3	420,154	4.9	2,216,802	4.6	1,623,990	1.3
2007	4,601,534	8.0	456,019	8.5	2,385,687	7.6	1,759,828	8.4
2008	4,901,772	6.5	489,997	7.5	2,573,515	7.9	1,838,260	4.5
2009	5,124,077	4.5	519,455	6.0	2,741,195	6.5	1,863,427	1.4
연평균증가율 (2000~2009)	4.69%		7.17%		7.39%		1.23%	

주: 1. 2000년 이전에는 간이사업자에 과세특례사업자의 실적이 포함됨

2. 법인, 일반, 간이사업자의 신고인원은 2기 신고인원 기준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¹¹⁾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시행된 2000~2009년 동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000년 약 1,386조원에서 2009년 약 3,198조원으로 연평균 9.74%씩 늘어나 2009년도에는 전년 대비 18.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법인사업자는 2009년 2,693조원으로 2000년 1,137조원에 비해 136.8%, 일반사업자는 2009년 476조원으로 2000년 220조원 대비 1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2000~2009년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연평균 증가율은 9.74%이며, 이 중 법인사업자는 연평균 10.05%, 일반사업자는 연평균 8.95% 증가하였음
 -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2000년 28.6조원에서 2009년에는 29.4조원으로 2.9%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음
 - 또한, 간이과세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0.31%에 불과하여 전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연평균 증가율 9.74%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

- 각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도입된 2000년에는 과세표준이 1999년 대비 일반사업자 20.8%, 법인사업자 18.4%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간이사업자는 오히려 2000년에는 전년 대비 3.7%, 2001년에는 전년 대비 7.1%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자의 과세분 및 영세율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임

<표 III-7> 연도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별 과세표준

(단위: 억원, %)

연도	계		법인		일반(개인)		간이(개인)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1999	11,717,850	10.9	9,598,884	9.5	1,821,606	18.4	297,360	13.6
2000	13,856,522	18.3	11,369,768	18.4	2,200,326	20.8	286,428	-3.7
2001	15,153,891	9.4	12,433,732	9.4	2,454,034	11.5	266,125	-7.1
2002	17,255,021	13.9	14,159,550	13.9	2,824,369	15.1	271,102	1.9
2003	18,827,245	9.1	15,565,243	9.9	3,008,677	6.5	253,325	-6.6
2004	21,280,857	13.0	17,812,752	14.4	3,228,273	7.3	239,832	-5.3
2005	22,276,583	4.7	18,575,818	4.3	3,459,367	7.2	241,398	0.7
2006	24,207,198	8.7	20,145,075	8.4	3,800,085	9.8	262,039	8.6
2007	26,798,665	10.7	22,317,804	10.8	4,185,224	10.1	295,636	12.8
2008	31,607,385	17.9	26,619,619	19.3	4,685,289	11.9	302,477	2.3
2009	31,982,653	1.2	26,928,137	1.2	4,759,891	1.6	294,625	-2.6
연평균증가율 (2000~2009)	9.74%		10.05%		8.95%		0.31%	

주: 1. 2000년 이전에는 간이사업자에 과세특례사업자의 실적이 포함됨
 2. 법인, 일반, 간이사업자의 신고인원은 2기 신고인원 기준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간이과세자비율 및 납부의무면제자비율의 감소

- 총사업자 수에서 납부의무면제자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자진 납부인원을 나타내는 납부인원은 200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9년에는 2000년 196만명 대비 약 83% 증가한 360만명으로 나타남
 - 납부인원은 2000~2009년 동안 연평균 6.96% 증가하여 총사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 4.7%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납부인원을 총사업자 수로 나눈 납부인원비율은 2000년 57.9%에서 2009년에는 70.2%로 12.3%p 증가한바, 이는 신용카드활성화정책으로 인한 신용카드 이용실적의 증가,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 등의 과세인프라 확충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음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는 2009년 기준으로 총사업자 512만명 중 186만명을 차지하여 그 비중이 약 36.4%에 이르고 있음
 - 2000~2009년 동안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은 소폭 증가하였고, 간이과세자의 수를 총사업자의 수로 나누어서 구한 간이과세자비율은 2009년에는 2000년 49.2%에서 12.8%p 하락한 36.4%로 크게 축소됨

- 납부의무면제자의 수를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를 합한 일반사업자의 수로 나누어서 구한 납부의무면제자 비율은 2000년 42.1%에서 2009년 29.8%로 12.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간이과세자 중에서 1기 과세기간의 매출 과세표준이 1,200만원 미만인 납부의무면제자 수는 2009년 기준 약 152만명으로, 이는 2000년 약 142만명에 비해 6.94% 증가하였음

<표 III-8> 과세인원비율 및 간이과세자 비율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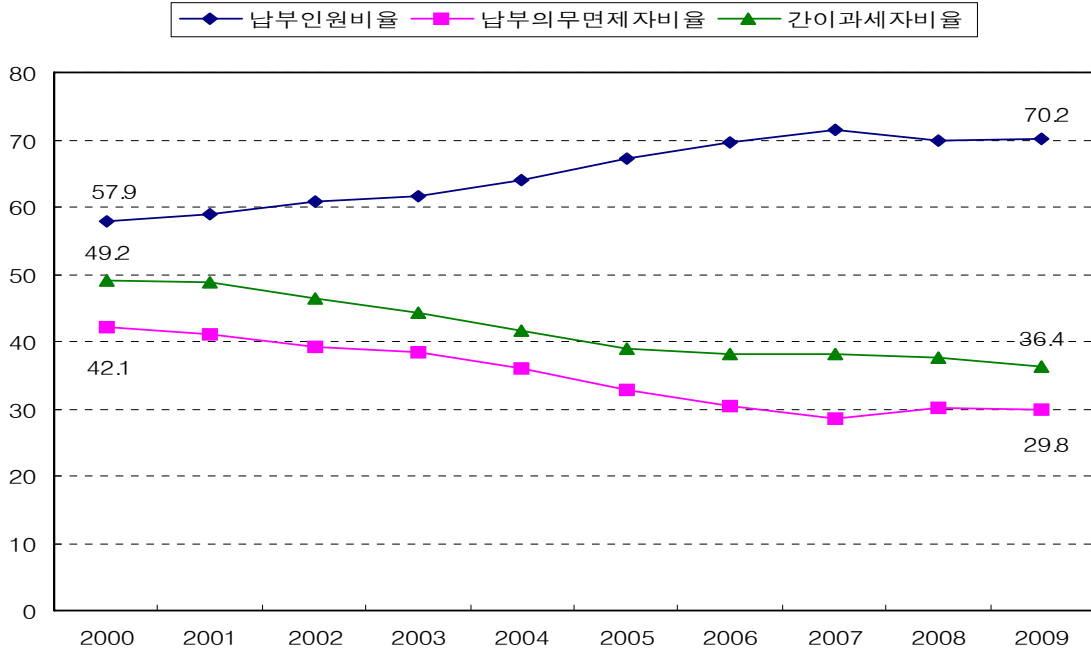
(단위: 천명, %)

구분	총 사업자수 (A)	납부의무 면제자 (B)	납부인원 (C=A-B)	납부인원 비율 (D=C/A)	간이 과세자 (E)	간이 과세자비율 (F=E/A)
2000	3,390	1,426	1,964	57.9	1,669	49.2
2001	3,709	1,522	2,187	59.0	1,814	48.9
2002	3,963	1,558	1,405	60.7	1,843	46.5
2003	3,994	1,530	2,464	61.7	1,773	44.4
2004	3,942	1,423	2,519	63.9	1,645	41.7
2005	4,123	1,329	2,705	67.1	1,604	38.9
2006	4,261	1,295	2,965	69.6	1,624	38.1
2007	4,602	1,307	3,295	71.6	1,760	38.2
2008	4,902	1,478	3,424	69.9	1,838	37.5
2009	5,124	1,525	3,600	70.2	1,863	36.4
연평균증감률 (2000~2009)	4.70%	0.75%	6.96%	2.16%	1.23%	-3.29%

주: 1. 연도별 인원은 각 연도 2기 확정신고 인원임
 2. 납부인원은 총사업자 수에서 납부의무 면제자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자진 납부인원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III-7] 과세인원비율 및 간이과세자 비율 추세

(단위: %)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특히, 2000~2009년 동안 각 지표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총사업자 수는 4.7%씩, 납부인원은 6.96%씩 증가한 반면, 납부의무면제자의 수는 0.75%, 간이과세자는 1.23%로 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즉, 총사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면제자와 간이과세자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적고, 이에 따라 납부의무면제자비율 및 간이과세자비율은 오히려 감소함
 - 이는 납세의무면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금수입업종인 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의 납부의무면제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자영업자의 세원이 노출됨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즉, 납부의무면제자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오히려 감소한 업종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현금수입업종인 음식점, 서비스업, 소매업으로 나타남
 - 2001~2009년까지 납부의무면제자 수의 연평균증가율은 0.02%로 소폭 증가

하였으나, 음식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연평균 5.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기타서비스업과 소매업이 각각 연평균 0.99%, 0.48% 감소하였음

3)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의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의 증가

- 법인사업자의 신고현황 및 과세표준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도입된 이후인 2000~2009년에 전체 신고인원은 연평균 7.17%, 전체 과세표준은 연평균 10.05%씩 증가하였음
 - 특히, 2000년과 2001년의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각각 19.9%, 15.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과세표준도 전년 대비 각각 8.4%, 9.4%씩 증가하였음
 - 또한, 2000~2009년 동안 법인사업자의 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 신고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음식업이 10.4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서비스업 6.52%, 소매업 5.90%의 순으로 나타났음
 - 특히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음식업의 경우 2000년의 신고인원은 1999년 대비 43.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서비스업도 2000년에 1999년 대비 31.3%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현황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현금수입업종인 음식업과 서비스업이 1999년 대비 각각 44.8%, 29.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음식업과 서비스업의 사업자 수 증가율 21.35%, 20.8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의 시행이 신용카드 이용실적의 증가로 이어져 주요 소비자 대상 현금수입업종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법인사업자 전체 과세표준에서 현금수입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00~2009년 평균 12.2%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의 현금수입업종 과세표준의 증가가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 일반사업자 전체 신고인원은 2000~2009년에 연평균 7.39%, 전체 과세표준은 연평균 8.95% 증가하였음
 - 특히, 신고인원의 경우 2000년에는 144만명으로 1999년 106만명 대비 36.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도 2000년도에 220조원으로 1999년 182조원에 비하여 20.79% 증가하였음

- 일반사업자의 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의 2000~2009년 신고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음식업이 11.4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숙박업 6.36%, 소매업 4.5%, 서비스업 4.3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업종은 2009년 기준으로 일반사업자 신고인원 중 32.6%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음식업의 경우에는 2000년 신고인원이 1999년 대비 436.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업과 소매업도 1999년 대비 각각 135.4%, 100.2%라는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표 III-9> 일반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신고인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전 업종 합계	소계	현금수입업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2000	1,442,987	516,745	232,559	109,799	7,658	166,729
2001	1,573,217	565,574	257,284	119,122	8,407	180,761
2002	1,774,268	619,573	272,661	139,359	10,305	197,248
2003	1,861,707	643,628	275,940	150,775	10,939	205,974
2004	1,924,877	665,586	274,974	158,433	10,611	221,568
2005	2,117,551	647,539	283,554	177,894	10,850	175,241
2006	2,216,802	685,498	288,455	197,653	10,649	188,741
2007	2,385,687	743,702	304,572	225,568	11,139	202,423
2008	2,573,515	820,942	326,408	256,779	12,153	225,602
2009	2,741,195	894,534	345,736	290,569	13,335	244,894
연평균 증가율 (2000~2009)	7.39%	6.29%	4.50%	11.42%	6.36%	4.36%

주: 연도별 인원은 각 연도 2기 확정신고 인원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또한, 일반사업자의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의 2000~2009년 동안 연평균 과세표준 증가율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음식업이 20.96%로 가장 높았고, 숙박업 14.05%, 소매업 9.5%, 서비스업 6.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종이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9년 기준 31% 수준임
- 특히, 음식업과 소매업은 2000년 과세표준이 1999년 대비 각각 119.5%, 26.8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남
- 이는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법인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일반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추정됨

<표 III-10> 일반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과세표준 신고현황

(단위: 억원)

구분	전 업종 합계	소계	현금수입업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2000	2,200,327	573,299	346,115	76,954	4,821	145,409
2001	2,454,033	737,078	429,272	131,440	7,417	168,949
2002	2,824,368	868,728	485,018	169,619	9,134	204,957
2003	3,008,678	913,234	499,676	177,433	9,400	226,725
2004	3,228,274	974,305	528,817	186,360	9,206	249,922
2005	3,459,367	979,755	571,184	220,168	9,975	178,428
2006	3,800,085	1,112,962	629,300	268,031	11,558	204,073
2007	4,185,224	1,250,843	688,748	323,403	12,965	225,727
2008	4,685,289	1,421,828	781,678	379,386	14,793	245,971
2009	4,759,891	1,478,887	783,158	426,552	15,743	253,434
연평균증가율 (2000~2009)	8.95%	11.10%	9.50%	20.96%	14.05%	6.37%

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자의 과세분 및 영세율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2000~2009년에 간이사업자의 전체 신고인원은 연평균 1.23%, 전체 과세표준은 연평균 0.31%씩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음
 - 특히, 신고인원의 경우 2000년에는 전년 대비 오히려 2.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간이사업자 중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의 2000~2009년 동안 신고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숙박업과 소매업은 각각 0.65%, 0.01%씩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음식업은 오히려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000년 신고인원이 1999년에 비하여 15.81% 감소하였으며, 숙박업과 서비스업 역시 각각 전년 대비 5.44%, 0.89% 감소하였음

<표 III-11> 간이사업자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신고인원현황

(단위: 명)

구분	전 업종 합계	소계	현금수입업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2000	1,669,128	1,033,715	366,070	410,400	19,938	237,307
2001	1,814,614	1,141,949	393,024	471,691	21,583	255,651
2002	1,843,894	1,115,926	381,068	465,509	21,610	247,739
2003	1,773,804	1,023,647	337,360	433,903	20,405	231,979
2004	1,645,329	922,891	298,638	392,556	19,532	212,165
2005	1,603,663	925,820	302,363	388,035	19,549	215,873
2006	1,623,990	918,381	311,029	374,997	19,451	212,904
2007	1,759,828	959,388	332,777	380,526	20,738	225,347
2008	1,838,260	981,442	347,557	373,615	21,219	239,051
2009	1,863,427	1,001,579	366,348	366,499	21,127	247,605
연평균 증가율 (2000~2009)	1.23%	-0.35%	0.01%	-1.25%	0.65%	0.47%

주: 연도별 인원은 각 연도 2기 확정신고 인원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또한, 간이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현황은 2000~2009년 전체적으로 연평균 0.31% 증가하였으며, 이 중 현금수입업종인 소매업은 2.9%, 숙박업 1.77% 감소하였으며, 음식업은 1.56%, 서비스업은 1.20%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음
- 이는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인하여 세원 노출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소득과 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에 영향이 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표 III-12> 간이사업자 소비자상대 현금수입업종 과세표준 신고현황

(단위: 억원)

구분	전 업종 합계	소계	현금수입업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2000	286,427	221,030	99,270	85,746	3,963	32,051
2001	266,125	201,453	80,593	85,432	3,648	31,780
2002	271,102	202,287	77,863	87,971	3,537	32,916
2003	253,325	180,024	64,689	81,087	3,066	31,182
2004	239,833	168,621	58,327	77,259	2,737	30,298
2005	241,398	176,162	58,457	83,587	2,741	31,377
2006	262,039	190,256	63,416	91,567	3,011	32,262
2007	295,635	214,283	72,483	103,345	3,518	34,937
2008	302,477	219,189	75,461	104,133	3,581	36,014
2009	294,625	213,792	76,186	98,547	3,375	35,684
연평균 증가율 (2000~2009)	0.31%	-0.37%	-2.90%	1.56%	-1.77%	1.20%

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사업자의 과세분 및 영세율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IV.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의 사회적 비용

1.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 신용카드거래시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는 신용카드거래 이용금액¹²⁾을 사용하여 비용을 추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자금조달비용, 연체관리비용, 가맹점관리비용, 매출처리비용, 손실보상비용, 대금통보·청구·입금비용, 인건비 및 전산처리비용 등을 고려함
 - 신용카드거래에 발생하는 이러한 비용은 현금거래나 직불·체크카드 거래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음

- 단순추정방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연평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이용금액을 고려해볼 때, 가맹점 수수료비용의 규모는 매우 크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¹³⁾

- 2000~2010년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52조 6,500억원가량을 가맹점수수료로 지출하였음
 - 2000~2010년 평균 가맹점 수수료비용은 약 4조 7,900억원으로 나타남
 - 2008년의 경우 평균 수수료비용은 약 6조 2,000억원, 2009년의 경우 약 6조 7,500억원, 그리고 2010년의 경우 약 7조 2,900억원의 가맹점수수료가 지출된 것으로 추정됨

12) 이용금액: 신용카드 전체 이용금액에서 현금서비스 및 기업구매카드실적을 제외한 금액

13) 단순추정 방식은 해당기간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구한 연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을 카드거래 이용금액에 곱했을 때 나오는 수치이므로 실질적인 비용과 다를 수 있음. 여신금융전문업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09%임. 가맹점수수료율은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최초로 추진한 1999년도에는 평균 3.5% 정도 수준이었으나, 그 후 가맹점의 반발과 정부의 인하 압력으로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임

<표 IV-1>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 부담 추정액

(단위: %, 천억원)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이용금액	부담 추정액
2000	2.92	778.7	22.7
2001	2.50	1,342.3	33.6
2002	2.30	1,740.5	40.0
2003	2.29	1,705.3	39.1
2004	2.33	1,671.0	38.9
2005	2.36	1,904.7	45.0
2006	2.32	2,148.2	49.8
2007	2.28	2,410.8	55.0
2008	2.22	2,793.1	62.0
2009	2.22	3,039.4	67.5
2010	2.08	3,506.9	72.9
합계	-	23,040.9	526.5
평균	2.40	2,094.6	47.9

주: 2001년, 2002년, 2010년의 평균가맹점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의 보도자료에 기초함
 자료: 신용카드 이용금액 - 한국은행, 매년도
 평균가맹점수수료율 - 금융위·금감원·여신금융협회 보도자료

2. 조세지출 비용

- 우리나라는 정부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바, 카드거래가 발생하면 조세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임
 - 근로소득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2」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짐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의 2」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며,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역시 2010년까지 발생함
 - 2000년 도입되어 2006년까지 행해졌던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의

상금액 역시 조세지출 비용은 아니지만 정부의 예산에서 지출된 신용카드거래 활성화정책을 위한 정부의 지출임

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¹⁴⁾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통하여 1999~2011년까지 지출된 총조세비용은 약 12조 6,853억원으로 추계됨
 - 동 제도로 인한 2011년 조세지출비용은 약 1조 5,659억원으로 2000년¹⁵⁾ 조세지출비용인 약 346억원보다 45.3배 증가한 수준임
 - 제도 도입 후 매년 1,305억원의 규모로 증가한 수치임
 - 제도 도입초기인 2001년과 2002년에 발생한 조세지출비용은 각각 485.8%, 207.5%의 가파른 증가율을 기록함

<표 IV-2>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금액	증가액	증가비율
1999	0	-	-
2000	346	346	-
2001	2,027	1,681	485.8
2002	6,233	4,206	207.5
2003	8,308	2,075	33.3
2004	8,966	658	7.9
2005	9,812	846	9.4
2006	10,465	653	6.7
2007	12,506	2,041	19.5
2008	15,171	2,665	21.3
2009	18,934	3,763	24.8
2010	18,426	-508	-2.7
2011	15,659	-2,767	-15.0
합계	126,853		

주: 2011년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매년도

1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15) 1999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조세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¹⁶⁾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를 통하여 1999~2011년까지 지출된 총조세지출비용은 약 9조 75억원으로 추계됨
 - 동 제도로 인한 2011년 조세지출비용은 1조 2,629억원으로 1999년 조세지출비용인 718억원보다 약 17.6배 증가한 수치임
 - 1999~2011년 매년 평균 993억원씩 증가한 수치임
 - 2009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이 1조 36억원을 기록하여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후, 2011년 1조 2,629억원을 기록하여 1999~2011년 중 가장 높은 조세지출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금액은 세액공제율과 한도액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2000~2003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00년 237.9%, 2001년 123.6%, 2002년 39.1%를 기록함
 - 2000~2003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인상되었고, 세액공제의 연간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됨
 - 2004~2005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각각 29.9%와 8.2%만큼 감소함
 - 2004년 세액공제율은 1%로 하향 조정되었음
 - 2005~2011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금액은 매년 평균 1,028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기간 공제율 역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2005년 간이과세자 중 음식·숙박업자는 1.5%의 우대공제율을 적용받음
 - 2008년 전체 공제율은 1.3%, 간이과세자는 2.6%로 상향조정됨

1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표 IV-3> 일반사업자 카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단위: 억원, %)

연도	금액	증가액	증가비율
1999	718	-	-
2000	2,426	1,708	237.9
2001	5,425	2,999	123.6
2002	7,546	2,121	39.1
2003	7,748	202	2.7
2004	5,435	-2,313	-29.9
2005	4,991	-444	-8.2
2006	5,893	902	18.1
2007	6,992	1,099	18.6
2008	8,451	1,459	20.9
2009	10,036	1,585	18.8
2010	11,785	1,749	17.4
2011	12,629	844	7.2
합계	90,075		

주: 2011년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매년도

다.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제도¹⁷⁾

-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제도를 통하여 1999~2011년까지 지출된 총 조세지출비용은 4,581억원으로 추계됨
 - 동 제도의 2011년 조세지출비용은 419억원으로 1999년 조세지출비용인 159억 원보다 약 2.6배 증가한 수준임
 - 1999~2011년 매년 평균 22억원씩 증가한 수치임
 - 동 제도는 일몰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는 폐지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17)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표 IV-4> 수익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추이

(단위: 억원, %)

년도	금액	증가액	증가비율
1999	159	-	-
2000	270	111	69.8
2001	416	146	54.1
2002	595	179	43.0
2003	405	-190	-31.9
2004	296	-109	-26.9
2005	201	-95	-32.1
2006	278	77	38.3
2007	369	91	32.7
2008	386	17	4.6
2009	375	-11	-2.8
2010	412	37	9.9
2011	419	7	1.7
합계	4,581		

주: 2011년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매년도

라.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는 2000년 도입된 이래 2005년 폐지될 때까지 총 803억 6,000만원이 당첨금으로 지급되었음
 - 2004년부터 직불카드영수증 복권제도가 별도로 운영되었으며, 2005년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도입으로 지급금액이 대폭 축소되었음

<표 IV-5> 연도별 신용카드영수증 당첨금 지급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	합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지급현황	803.6	176	192	192	163	60.6	20

주: 2004년부터 직불카드영수증 복권제도는 별도로 운영되었으며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제도 도입으로 지급금액 대폭 축소
 자료: 국세청

3. 신용불량자 관련 사회적 비용

-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카드사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카드발급을 남발하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
- 신용대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2000년 초기 신용불량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3년에는 약 372만명에 달함
 - 신용불량자 수는 IMF 외환위기 직후 1997년말 143만명에서 1999년 193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함
 - 신용불량자 수는 2000년까지는 200만명 수준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2001년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의 변경 등에 따라 245만명으로 증가함
 - 신용불량자 수는 2002년 264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후, 2003년 전년 대비 41.4% 증가한 372만명으로 집계됨

<표 IV-6> 1997~2003년 신용불량자 추이

(단위: 만명,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신용불량자	143.0	193.0	199.6	208.4	245.0	263.6	372.0
증가율	-	35.0	3.4	4.4	17.6	7.6	41.1

자료: 국회보, 2004

4. 요약

- 2000~2010년 신용카드가맹점과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위하여 부담한 누적비용은 71조 9,229억원으로 집계됨
 - 신용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 지출비용과 정부가 지출한 조세비용은 2000년

2조 5,918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후 매년 평균 15.97%씩 증가하여 2010년 10조 3,523억 원을 기록함

- 2010년도 발생한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2000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4배에 가까운 수준임

<표 IV-7> 신용카드 거래의 사회적 비용

(단위: 억 원)

연도	가맹점 수수료 부담 추정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금액	합계
2000	22,700	346	2,426	270	176	25,918
2001	33,600	2,027	5,425	416	192	41,660
2002	40,000	6,233	7,546	595	192	54,566
2003	39,100	8,308	7,748	405	163	55,724
2004	38,900	8,966	5,435	296	61	53,658
2005	45,000	9,812	4,991	201	20	60,024
2006	49,800	10,465	5,893	278	-	66,436
2007	55,000	12,506	6,992	369	-	74,867
2008	62,000	15,171	8,451	386	-	86,008
2009	67,500	18,934	10,036	375	-	96,845
2010	72,900	18,426	11,785	412	-	103,523
합계	526,500	111,194	76,728	4,003	804	719,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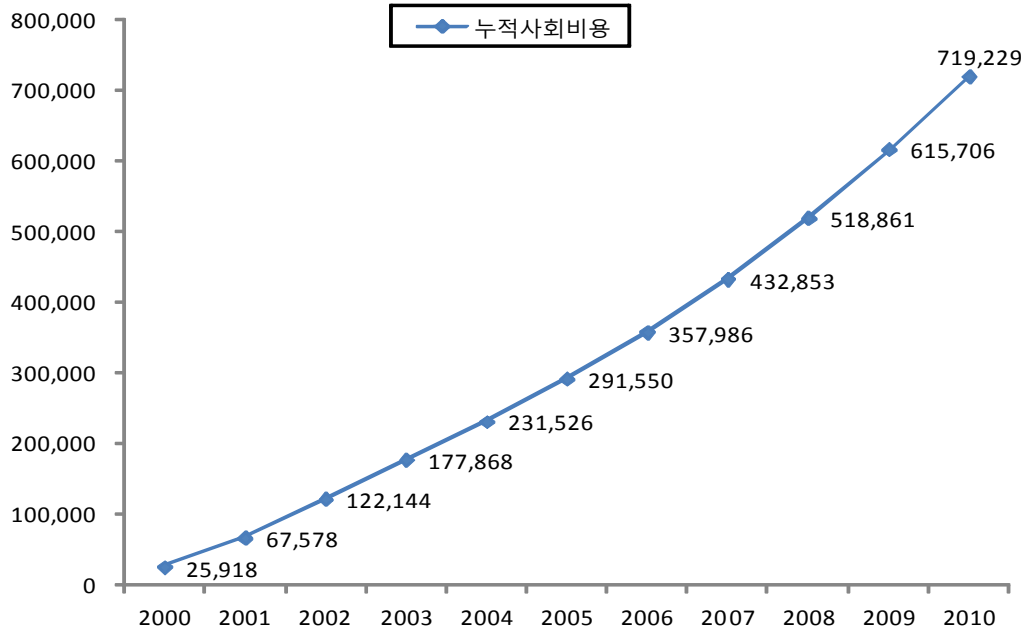
주: 용의한 비교를 위하여 2000~2010년의 수치만 비교하고 있음. 1999~2011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총액은 12조 6,853억 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총액은 9조 75억 원,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4,581억 원임.

조세지출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는 「조세지출보고서」를 참고함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그림 IV-1]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의 누적 사회적 비용

(단위: 억원)



자료: 한국은행,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V.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편중현상

가.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¹⁸⁾

□ 2010년 기준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규모는 「1천만원 이하」 구간이 25만원, 「8천만원 초과」 구간은 약 227만원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액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¹⁹⁾

- 「8천만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약 227만원,
- 「4천만~8천만원」 구간의 1인당 평균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약 220만원,
- 「1천만~4천만원」 구간의 1인당 평균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약 157만원,
- 「1천만원 이하」 구간의 1인당 평균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약 25만원임.

<표 V-1>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단위: 원)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2009			2010		
	합산한 경우	과세 미달자	과세 대상자	합산한 경우	과세 미달자	과세 대상자
1천만원 이하	250,625	259,558	210,518	249,763	257,092	213,182
1천~4천만원	1,755,962	1,454,317	1,803,626	1,577,810	1,195,648	1,633,562
4천~8천만원	2,878,369	2,629,595	2,881,012	2,209,774	1,661,400	2,213,447
8천만원 초과	3,222,196	2,345,785	3,222,263	2,273,270	1,868,102	2,273,292

주: 1.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인원

2. 과세대상근로소득 규모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은 2008년부터 통계가 생산됨

3. 2009년 이후로 과세미달자에 대한 통계가 생산됨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8) 과세대상근로소득 기준임

19) 과세미달자 합산

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²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 인한 2010년 귀속 과세대상 근로 소득 규모별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혜택은 소득공제제도의 특성상 고소득자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1천만원 미만」 소득구간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6,898원
- 「1천~4천만원」 소득구간: 5만 5,826원
- 「4천~8천만원」 소득구간: 19만 500원
- 「8천만원 초과」 소득구간: 42만 1,070원

<표 V-2>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2009			2010		
	소득세 감면액 (백만원)	인원 (명)	1인당 소득세 감면액 (원)	소득세 감면액 (백만원)	인원 (명)	1인당 소득세 감면액 (원)
1천만원 이하	327	47,637	6,860	322	46,621	6,898
1천~4천만원	229,989	3,703,972	62,092	203,812	3,650,882	55,826
4천~8천만원	549,674	2,150,055	255,656	415,125	2,179,139	190,500
8천만원 초과	218,608	352,291	620,532	180,728	429,211	421,070

주: 1.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소득세감면액 =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액 ×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결정세액 ÷ 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과세표준)

2. 과세미달자와 과세대상자를 합한 인원 및 금액을 바탕으로 함

3.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은 과세대상자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과세미달자를 합산한 1인당 소득세 감면액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반면, 2010년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²¹⁾되어

20) 과세대상근로소득 기준임

21) 2010년 이전 공제한도 = Min[500만원, 총 급여액의 20%] → 2010년 이후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과세대상근로소득 규모별 1인당 평균 소득세 감면액은 2009년과 비교하여 「1천만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소득자일수록 그 하락폭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8천만원 초과」의 구간은 2009년 1인당 소득세 감면액이 약 62만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47.4%가 감소한 42만원 수준으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임
- 반면, 「1천만원 이하」 구간의 저소득층은 0.6%로 소폭 증가한바, 이는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되었으나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고비용 신용카드 거래의 편중

-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활성화정책과 더불어 신용카드산업 관련 법규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이 신용카드 거래의 편중화를 유도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결제 거부 불가규정(Honor All Cards Rule)²²⁾과 수수료 추가부과 금지규정(No Surcharge Charge)²³⁾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
 - 카드가맹점에 대한 벌칙의 근거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임
- 신용카드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직불·체크카드의 이용률은 주요국에 비해 미미하며, 거래액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2006~2010년 신용카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뒤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순임
 - 2006~2010년 신용카드 거래액수의 비중은 평균 93.75%를 기록하여 카드거래액수의 대부분은 신용카드를 통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2) 카드결제 거부 불가규정(Honor All Cards Rule)은 신용카드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제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가맹점이 수수료 차이 등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를 선택적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23) 수수료 추가부과 금지규정(No Surcharge Rule)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하지 못하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용카드거래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의 외부성(externality)의 시장적 분배를 막고, 시장의 가격결정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원인임

- 동 기간, 체크카드 거래액수의 비중은 평균 5.97%를 기록하여 신용카드거래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함
 - 동 기간, 선불카드와 직불카드의 평균비중은 각각 0.26%, 0.02%를 기록
- 거래건수를 비교하였을 때, 거래액수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뒤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순임
- 2006~2010년 신용카드 거래건수의 비중은 평균 83.66%로 높았으나, 거래액수와 달리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동 기간, 체크카드 거래액수의 비중은 평균 15.72%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동 기간, 선불카드와 직불카드의 평균비중은 각각 0.58%, 0.04%를 기록

<표 V-3> 우리나라 지급결제수단 거래액수 및 거래건수 추이

(단위: 십억원, 천건, %)

지급결제수단		2006	2007	2008	2009	2010
거래액수	신용카드	370,958.5 (96.57)	403,632.2 (95.32)	456,420.6 (94.24)	466,358.1 (92.50)	493,735.9 (90.11)
	직불카드	113.1 (0.03)	79.2 (0.02)	57.4 (0.01)	44.8 (0.01)	39.3 (0.01)
	체크카드	12,329.9 (3.21)	18,826.8 (4.45)	26,802.0 (5.53)	36,461.6 (7.23)	51,781.0 (9.45)
	선불카드	728.3 (0.19)	923.0 (0.22)	1,019.5 (0.21)	1,290.6 (0.26)	2,359.0 (0.43)
	합계	384,129.8	423,461.2	484,299.5	504,155.1	547,915.2
거래건수	신용카드	3,129,654.8 (90.03)	2,472,474.3 (82.30)	4,147,404.7 (84.43)	4,880,084.8 (81.88)	5,814,817.1 (79.68)
	직불카드	2,464.8 (0.07)	1,834.1 (0.06)	1,334.7 (0.03)	1,027.3 (0.02)	949.5 (0.01)
	체크카드	328,895.7 (9.46)	510,876.9 (17.00)	742,591.8 (15.12)	1,049,027.3 (17.60)	1,416,598.1 (19.41)
	선불카드	15,351.7 (0.44)	19,169.1 (0.64)	20,777.3 (0.42)	30,003.2 (0.50)	65,005.5 (0.89)
	합계	3,476,367.0	3,004,354.4	4,912,108.5	5,960,142.6	7,297,370.2

주: () 안은 해당연도 비중을 뜻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각 연도

3. 가맹점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가. 가맹점수수료율 수준

- 신용카드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업종 종사자와 수익구조가 약한 영세자영업자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가맹점수수료 수준은 일반적으로 가맹점이나 소비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으며,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가맹점수수료도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가맹점뿐만 아니라 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임

<표 V-4> 업종별 신용카드 평균 가맹점수수료율(2012년 1월 31일 기준)

(단위: %)

구분업종	평균	구분업종	평균
숙박	3.17	서점	3.01
항공사	2.23	사무/문구업체	2.93
여행사 및 렌터카	3.25	교육기관	2.58
대중교통	2.42	학원	3.24
골프장	1.72	전자/통신제품판매	2.69
레저시설 및 판매	3.19	국산신차	2.40
노래방	3.07	중고자동차	2.80
가축병원	3.02	기타운송수단판매	3.08
가구업체	3.16	자동차부품 및 정비업체	3.12
주유소	1.50	금융보험	2.95
유류판매	2.15	종합병원	1.67
백화점	2.27	일반병원	2.40

<표 V-4>의 계속

구분업종	평균	구분업종	평균
슈퍼마켓	2.11	의료기관	2.56
유통업체	2.65	이/미용실	3.15
할인점	2.03	화장품	2.96
면세점	2.50	일반음식점	2.58
편의점	2.27	유형 및 사치업	4.33
홈쇼핑 및 인터넷판매	2.74	제과점	2.96
상품권	2.25	농축수산물	2.68
의류 및 직물업체	3.06	건강식품	3.16
귀금속	3.34	대인서비스 및 용역제공업체	3.04
안경점	3.08	기타	3.19
패션잡화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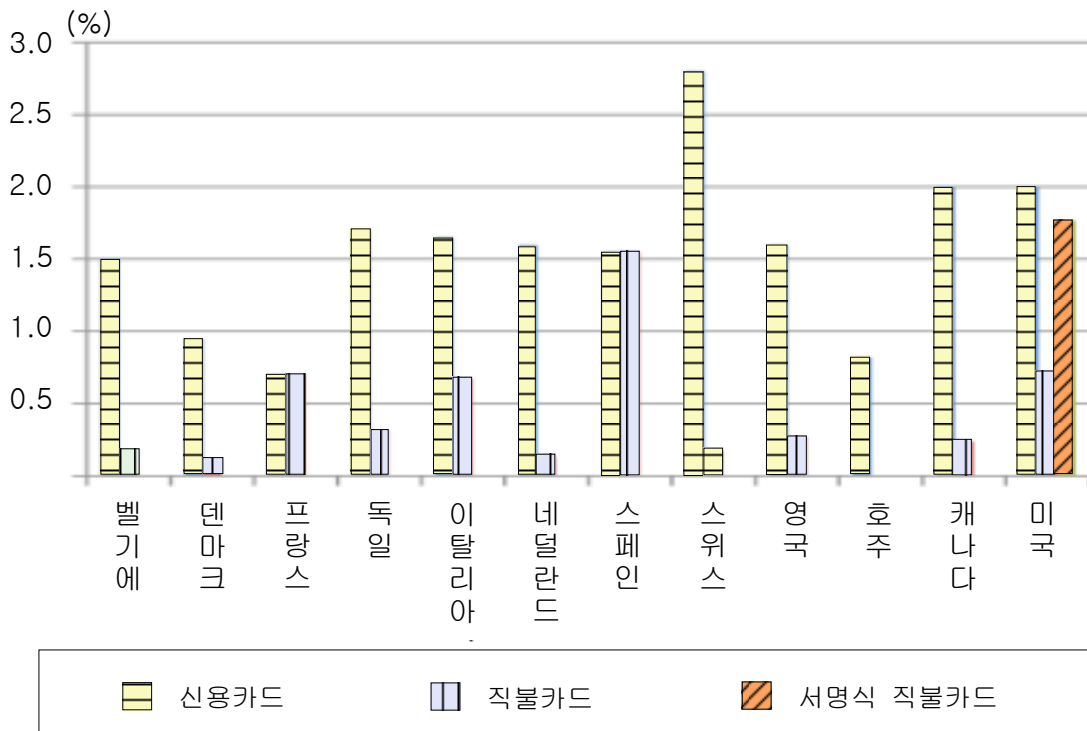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유사한 유형의 업종을 45개로 세분화
 2. 현재 공시되고 있는 가맹점수수료율은 매출 건전성 및 수익 기여도 등 요인들에 따라 실제 적용하는 업종별 최저, 중간, 최고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함.
 3. 중간수수료율이라 함은 실제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율 중 최고, 최저 수수료율을 순차적으로 제외하고 남은 수수료율임
 4. BC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적용 : 기업, 국민(BC), 경남, 대구, 부산, 신한(BC), 씨티, SC제일은행, 수협, 우리, 전북
 5. 일반가맹점 기준
 자료: 여신금융협회

-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모두 높은 실정임
 -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22%²⁴⁾수준이며, 이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임
 - 2008년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스위스가 2.8%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과 캐나다가 그 다음으로 높은 2% 수준임
 - 스위스,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비교국가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1%로 나타났음

2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기초한 평균 수수료율이나 평균 수수료율 산정방식 등에 대한 설명은 없으며,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1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은 2.09%임

-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1.0%,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1.5%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직불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주요국의 평균수준이나 거래량이 미미하고, 체크카드 거래량이 직불카드 거래량에 월등히 높음
 -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스페인이 1.5%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1.0% 미만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서명식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1.75%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V-1] 주요국의 카드거래 가맹점 수수료율



자료: 한국은행 (2010)

<표 V-5> 우리나라의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단위: %)

연도	2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수수료율	2.92	2.29	2.33	2.36	2.32	2.28	2.22

자료: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나. 가맹점수수료 인하 추이

-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추진한 이래 카드사들은 여론이나 정부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해옴

<표 V-6>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추이

(단위: %)

연도	인하 대상업체	변경전	변경후
2007	영세가맹점	2.0~4.5	2.0~2.2
	일반가맹점	1.5~4.5	1.5~3.6
2008	일부 중소가맹점	2.74	2.57
2009	재래시장가맹점	2.0~3.6	2.0~2.2
2010	재래시장가맹점	2.0~2.2	1.6~1.9
	중소가맹점	2.3~3.6	2.0~2.4

자료: 여신금융협회

4. 가맹점수수료 편차의 적정성

가. 가맹점수수료율 편차 현황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의 적정성과 더불어 수수료 관련 사회적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임
 - 이는 신용카드사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간 수수료율 결정 관련 협상력 차이 (bargaining power)와 연관이 있음
 - 예를 들면 가맹점수수료율 결정 협상력이 강한 국세청과 대형마트는 각각 1.20%²⁵⁾와 1.50%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음

25) 2011년 기준

- 우리나라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들은 가맹점수수료 책정에 있어 협상력이 낮고,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의 불합리성과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인하여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맹점수수료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들은 제품구입단가 측면에서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판매시에는 가맹점수수료가 높아 대형 가맹점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우리나라 신용카드 업종별 가맹점수수료율 분포를 볼 때, 같은 산업으로 분류되고 동일 물품을 판매하고 있어도 신용카드사는 상점마다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 동일업종의 가맹점수수료율 간 편차가 심한 편이고 산정방식도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아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표 V-7>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편차 비교(2012년 1월 31일 기준)

(단위: %)

구분업종	최저값	최대값	(최대값/최저값) *100	구분업종	최저값	최대값	(최대값/최저값) *100
숙박	2.94	3.36	114.62	서점	2.83	3.20	113.03
항공사	1.74	2.49	143.14	사무/문구업체	2.59	3.23	124.94
여행사 및 렌터카	3.02	3.31	109.62	교육기관	1.89	2.94	155.29
대중교통	1.96	2.91	148.32	학원	3.08	3.29	106.63
골프장	1.5	1.94	129.56	전자/통신제품판매	2.38	3.25	136.53
레저시설 및 판매	2.91	3.43	117.72	국산신차	2.11	2.45	116.23
노래방	2.76	3.19	115.84	중고자동차	2.67	2.85	107.03
가축병원	2.97	3.12	104.94	기타운송수단판매	2.66	3.27	122.87
가구업체	3.07	3.28	106.99	자동차부품 및 정비업체	2.91	3.22	110.45
주유소	1.5	1.5	100.00	금융보험	1.88	3.19	170.27
유류판매	2.01	2.15	106.96	종합병원	1.46	1.61	110.11
백화점	2.03	2.79	137.25	일반병원	2.27	2.54	112.01
슈퍼마켓	1.86	2.31	123.94	의료기관	2.40	2.91	120.90
유통업체	1.95	2.88	147.56	이/미용실	2.96	3.28	110.63
할인점	1.69	2.37	140.25	화장품	2.66	3.10	116.43

<표 V-7>의 계속

구분업종	최저값	최대값	(최대값/최저값) *100	구분업종	최저값	최대값	(최대값/최저값) *100
면세점	2.15	2.86	133.18	일반음식점	2.53	2.67	105.44
편의점	2.20	2.5	113.81	유흥 및 사치업	3.47	4.50	129.81
홈쇼핑 및 인터넷판매	2.01	3.23	160.50	제과점	2.68	3.03	113.07
상품권	1.93	3.32	172.68	농축수산물	2.17	2.99	137.87
의류 및 직물업체	2.67	3.28	122.85	건강식품	2.77	3.30	118.91
귀금속	2.96	3.39	114.66	대인서비스 및 용역제공업체	2.04	3.43	168.18
안경점	2.89	3.14	108.59	기타	2.59	3.44	133.16
패션잡화	2.72	3.34	122.76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유사한 유형의 업종을 45개로 세분화
 2. BC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적용 : 기업, 국민(BC), 경남, 대구, 부산, 신한(BC), 씨티, SC제일은행, 수협, 우리, 전북
 3. 산은캐피탈(주)는 기업상용카드만을 취급하는 회사로서 외환은행과 가맹점 제휴를 통해 외환은행의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자료: 여신금융협회

나. 가맹점수수료율 편차의 원인

- 가맹점수수료가 업종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정부가 신용카드 도입 초기에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야기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에서 시작함
- 1980년대 초 신용카드가 국내에 도입·정착되던 시기에 재무부가 당시의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국민 편의 업종에 낮은 수수료율인 3%, 유흥 및 사치 업종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5%, 나머지 업종은 4%로 설정함
 - 이러한 왜곡된 가맹점수수료 체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왜곡된 결정체계가 더욱 악화되었음

-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시장은 도입 당시 「3-당사자」 체제를 기반으로 운영됨으로써 수수료 결정시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며 협상력이 높은 신용카드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음
 - 「3-당사자」 체제에서는 신용카드사업자가 카드발급과 매입업무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수수료 결정시 경쟁요인이 없으며,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에 의하여 경쟁이 제한되어 시장이 완전경쟁적이지 못함
 -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가맹점의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음²⁶⁾

26) 근거규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임

VI. 정책과제

1.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신용카드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지급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으므로 원래 한시적으로 도입한 조특법상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사회적 비용이 적은 직불카드 활성화에 치중할 필요가 있음
 - 총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에는 8.5%에서 2010년에는 56.5%로 증가
 - 1999년 약 3,899만매 수준이었던 신용카드 발급 수는 연평균 12.2%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약 1억 1,658만매 수준에 이르러, 경제활동인구가 소지한 1인당 카드수는 평균 4.7매에 달함
 - 신용카드 가맹점도 1999년 619만점에서 매년 빠르게 증가해 2010년 기준 1,770만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1999년 619만점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임

- 신용카드 총거래액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493조 7,359억원²⁷⁾을 기록하였으며, 거래건수는 약 58억건을 기록함
 - 최근에는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한 신용카드결제²⁸⁾도 증가

-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1999년에는 340만명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497만명이 되었으며, 납세인원 대비 과세미달 추정인원은 1999년 60.1%에서 2009년에는 27.5%로 감소하였음
 - 추계신고인원비율은 2000년 53%에서 2009년에는 37.9%로 감소하였고, 가장신고비율이 2000년에는 43.3%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59.4%로 증가하였음

27) 한국은행발표기준

28)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에서 9월 동안 발생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 건수는 전체 거래 건수의 평균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현금수입업종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의 기장신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1,386조원(2000년)에서 3,198조원(2009년)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사업자 중 일반사업자의 2009년 과세표준은 2000년의 220조에 비하여 116.3%나 증가한 476조임

○ 부가가치세 납부인원은 2000년에는 196만명에서 2009년에는 360만명으로 늘어나 약 83.2%가 증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인원도 일반과세자 비중이 1999년 35.3%에서 2009년 53.5%로 크게 증가하였음

- 반면, 간이과세자는 신고인원 비중이 1999년 56.9%에서 2009년 36.4%로 20.5%p 감소함

□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도입되어 정착되는 초기(2000~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부가가치세의 탄성치는 각각 2.46과 1.51로 국세탄성치 0.94보다 높게 나타나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효과가 초기에 매우 강력했다는 것을 의미함

○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의 종합소득세 신고분 탄성치도 동 기간의 국세탄성치 5년 평균 1.2를 크게 상회한 5년 평균 2.17로 나타나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세원이 노출된 영향이라고 추정됨

□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추진된 지난 10년간(1999~2009년)의 자영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과 근로소득(종합소득 원천분)의 탄성치는 각각 1.79와 0.70으로 자영소득의 증가가 훨씬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동 기간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 증가보다 자영업자의 종합소득 증가가 더 높았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효과로 추정됨

□ 그러나 신용카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조세지출

비용, 자영업자의 가맹점수수료 지출비용, 신용불량자 문제 등 국민이 부담한 사회적 비용은 약 71조 9,229억원에 달함

- 가맹점수수료 부담액이 약 52조 6,500억원
-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신용카드거래 활성화정책을 위한 조세지출규모²⁹⁾는 약 19조 2,729억원에 달함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로 약 11조 1,194억원 지출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로 7조 6,728억원
 -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제도로 4,003억원
- 2000~2005년까지 시행된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의 당첨금으로 총 804억원의 예산이 지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거래의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일몰조항이 적용되나 5차례가 일몰이 연장됨

- 해당 법령이 그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법령에 일몰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나, 원래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몰규정을 계속 연장해 옴

□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본래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으로서 이미 정책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라는 정책목적을 이미 충분히 달성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이 부담한 다양한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았음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에 의한 공제혜택이 있으며, 이외에도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운영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됨

2. 직불카드/체크카드 활성화

가. 직불카드 활성화로 가맹점수수료 절감

- 직불카드는 수수료의 개념이 카드결제 후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데 따른 거래성 비용이므로 대손비용과 기간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수수료가 신용카드에 비해 낮고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지급의 편의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수료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거래기록이 계좌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카드사용자는 자신의 은행잔고 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소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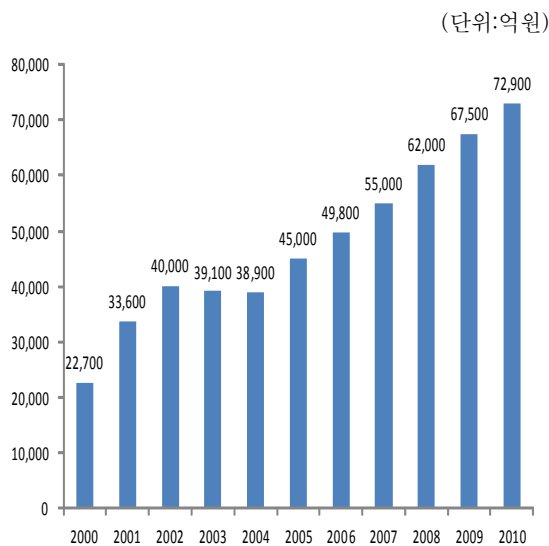
-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저렴한 직불카드의 결제비중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거래비용이 가장 높은 신용카드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함
 - 1999년 이후 총 민간소비지출에서 직불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2007년부터는 거래규모와 거래량은 오히려 각각 연평균 22.95%와 20.85%씩 감소하고 있음
 - 체크카드의 경우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임
 - 2010년 총 거래규모는 51조 7,810억원으로 신용카드 거래액의 약 10% 수준임

-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지불결제수단으로서의 신용카드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BIS)의 통계에 따르면 2006~2010년 우리나라 카드거래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평균 92.7%, 거래 건수는 연평균 84.5%를 기록하였다고 밝힘
 - OECD 주요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의 총 카드거래 대비 신용카드 거래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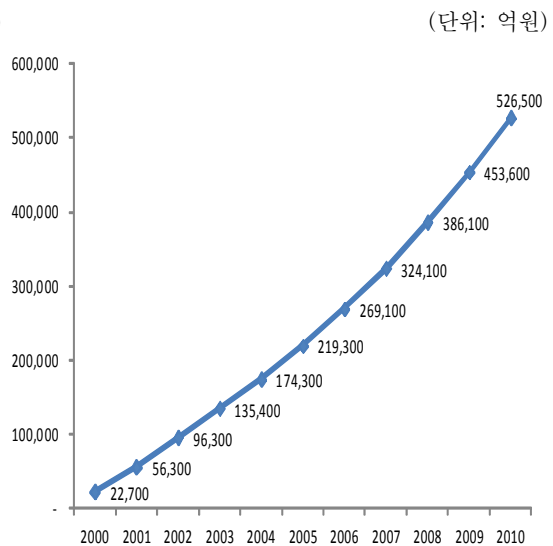
비율은 각각 62.1%, 65.3%, 62.7%를 기록하였으며, 신용카드 거래건수의 비율로 보면 각각 42.0%, 44.8%, 40.8%를 기록함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는 일부 또는 전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신용카드 결제가 점차 보편화되어 감에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빠르게 증가하여 2000~2010년까지 약 52조 6,500억원을 수수료로 부담함
- 2010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 가맹점이 지불한 수수료가 약 7조 2,900억원에 달함

[그림 VI-1] 연도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부담 추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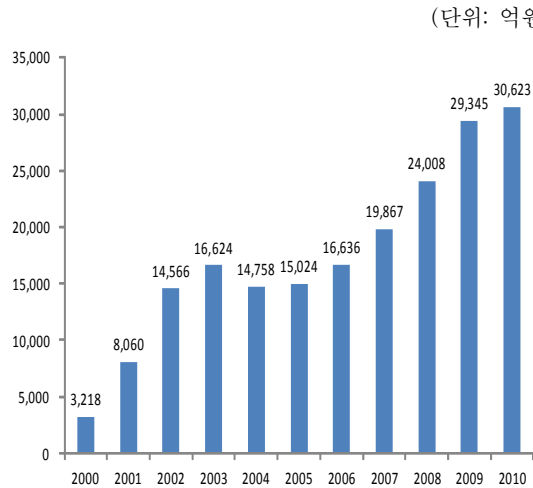
[그림 VI-2]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부담 누적 추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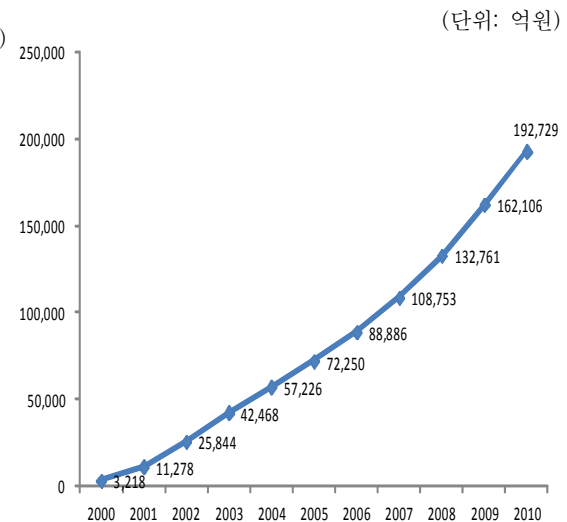
- 또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신용카드거래 활성화정책을 위한 조세지출 규모는 약 19조 1,925억원에 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처음 도입된 199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12조 6,853억원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9조 75억원이 지출되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의 경우 1999년부터 현재까지 4,581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됨

[그림 VI-3] 신용카드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조세지출규모(복권금액 포함) [그림 VI-4] 신용카드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 누적 총액(복권금액 포함)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자료: 「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 이외에도 2002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신용불량자 문제와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했던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음
 - 카드사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무분별한 신용카드발급, 개인의 과도한 소비와 충동구매, 정부의 관리감독의 소홀로 발생한 카드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도 적지 않음
- 2010년 금융당국 발표 기준으로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은 직불카드 1.0%, 체크카드 1.5% 신용카드 2.1% 수준이므로, 2000~2010년까지의 신용카드 거래를 직불카드로 대체되었다고 가정하면 가맹점은 약 29조 6,1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
 - 연평균으로는 가맹점의 수수료 절감액이 약 2조 6,900억원에 달함

<표 VI-1> 신용카드거래를 직불카드로 대체시 가맹점수수료 절감 추정액

(단위: 천억원)

연도	평균가맹점수 수수료율 (A)	신용카드 이용금액 (B)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C)=(A)×(B)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 (D)=1.0%×(B)	추정비용 절감액 (E)=(C)-(D)
2000	2.92%	778.7	22.7	7.8	15.0
2001	2.50%	1,342.3	33.6	13.4	20.1
2002	2.30%	1,740.5	40.0	17.4	22.6
2003	2.29%	1,705.3	39.1	17.1	22.0
2004	2.33%	1,671.0	38.9	16.7	22.2
2005	2.36%	1,904.7	45.0	19.0	25.9
2006	2.32%	2,148.2	49.8	21.5	28.4
2007	2.28%	2,410.8	55.0	24.1	30.9
2008	2.22%	2,793.1	62.0	27.9	34.1
2009	2.22%	3,039.4	67.5	30.4	37.1
2010	2.08%	3,506.9	72.9	35.1	37.9
합계	-	23,040.9	526.5	230.4	296.1
평균	2.35%	2,094.6	47.9	20.9	26.9

주: 1. 2001년, 2002년, 2010년 평균가맹점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의 보도자료에 기초함
 2. 직불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1.0%로 일괄 적용함
 자료: 신용카드 이용금액 - 한국은행, 매년도
 평균가맹점수수료율 - 금융위·금감원·여신금융협회 보도자료

- 주요국에서 발표한 지급수단의 거래당 발생비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지급수단의 효율적 선택은 지급수단의 거래당 비용과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함
 - 소액결제시 경우 현금거래가 가장 효율적이며 금액이 높을수록 카드거래가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 결제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카드는 직불카드>체크카드>신용카드 순으로 국민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직불/체크카드 거래의 활성화가 요구됨

-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국³⁰⁾ 중 거래당 사회적 비용이 가장 낮은 지급수단은 직불카드이며, 그 뒤로 현금거래, 신용카드거래 순으로 나타남

30)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호주, 캐나다 등 7개국의 중앙은행의 연구를 바탕으로 함

- 직불카드거래의 경우 주요국의 평균 거래당 사회적 비용은 0.517유로로 가장 낮은 순임
 - 특히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캐나다의 경우 직불카드거래가 현금거래 및 신용카드거래와 비교했을 때 사회적 비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신용카드거래의 경우 주요국의 평균 거래당 사회적 비용은 1.766유로로 나타났음
- 현금거래의 경우 주요국의 평균 거래당 사회적 비용은 0.717유로로 직불카드 다음으로 낮은 평균을 기록함

<표 VI-2> 지급수단별 사회적비용

(단위: 유로)

지급수단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호주	캐나다	평균
현금	0.300	0.530	0.500	0.990	1.850	0.600	0.250	0.717
직불카드	0.486	0.550	0.340	0.520	0.230	1.300	0.190	0.517
신용카드	3.587	2.620	0.480	2.610	0.244	2.000	0.820	1.766
기타	0.931	0.540	-	0.560	0.280	7.000	-	1.862

주: 캐나다의 직불카드비용은 최저수수료기준임

기타 지급수단: 네덜란드·벨기에는 선불카드, 노르웨이는 지로, 포르투갈은 입금이체, 호주는 수표(cheque)임
 자료: 한국은행,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사례 - 외국의 사례 조사 및 비교』, 2011, p. 45,

나. 직불카드의 장점

- (정부): 직불카드제도는 거래기록이 통장에 남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한 과세를 위한 과세자료가 확보되므로 신용카드와 동일한 과표양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현금통화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화폐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조폐 및 수표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가맹점): 직불카드 수수료는 그 성격상 순수한 취급수수료(transaction fee)에 해당하므로 신용에 기반하여 결제금액을 카드사로부터 차입하는 신용카드의 이자성 수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절감됨
 -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동일한 금액에 대한 카드결제를 요구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로 결제할 때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됨
 - 이외에도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분실·도난 및 불법 복제카드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음
 - 또한, 원칙적으로 직불카드는 자금이체와 동일하므로 결제 익일에 자금이 이체되어 자금순환 측면에서도 유리하며, 이외에도 직불카드는 거래내역이 계좌에 남기 때문에 장부처리도 수월할 수 있음

- (소비자): 직불카드는 외상거래를 기피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금 및 수표 소지에 따른 위험부담과 번거로움을 감소시켜 줌
 - 특히, 자신의 예금계좌의 잔액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과다사용으로 발생하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다. 정책대안

-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신용카드보다 우수한 직불카드/체크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의 범위를 신용카드에 비하여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2012년부터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유지하고, 직불 및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정책대안으로는 크게 3가지를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직불 및 체크카드 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임

- 둘째,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은 축소하고, 직불 및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셋째,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직불 및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임

□ 그러나 2012년부터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인상하였고, 여타 소득공제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의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선택의 폭은 첫 번째 대안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조세특례지원법상의 여타 소득공제율과 비교할 때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정책방향의 선택의 폭은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또는 점진적 축소에서 찾아야 함

○ 첫째, 기존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경우 직불 및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수준인 30%로 유지하더라도 신용카드와의 공제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빠르게 직불/체크카드 결제로 옮겨갈 것임

○ 둘째,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면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활성화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지출예산의 절감액이 작아지며,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첫 번째 방안보다 더 높음

3. 경쟁체제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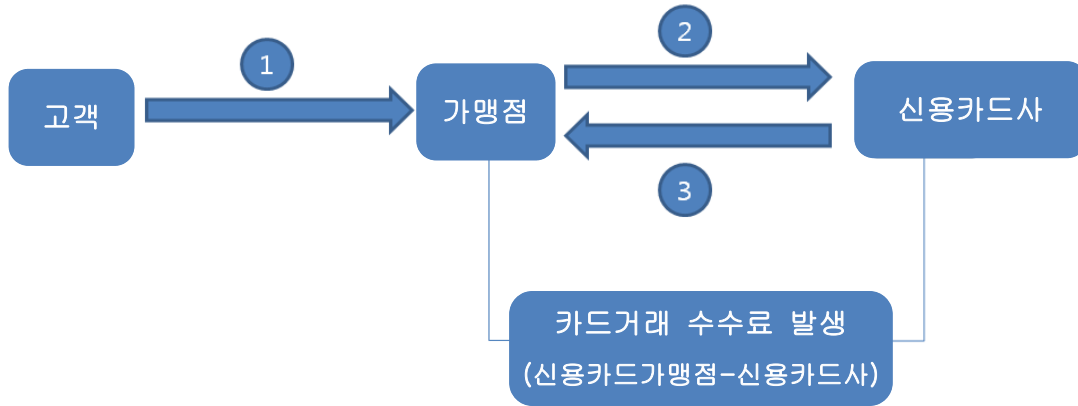
가. 현행 비경쟁적 수수료 결정체계의 문제점

□ 현재는 가맹점수수료 결정에 있어서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가맹점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카드사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하고 있지만, 카드사나 가맹점 모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기본적으로 카드사가 카드발행과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3-당사자」 체제로서 경쟁원리에 의한 가맹점수수료 책정이 불가능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협상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 「3-당사자」 체제에서는 카드사만이 실질적으로 수수료율과 연회비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임
 - 특히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거부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카드로 결제하는 수밖에 없고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음

- [그림 VI-5]는 「3-당사자」체제에서 신용카드 거래흐름과 카드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는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3-당사자」체제에서는 신용카드사업자가 카드발급과 매입업무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수수료 결정시 경쟁요인이 없음
 - 즉, 수수료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 사업자 사이에 결정되지만, 협상력이 없는 중소 및 영세 가맹점은 카드사가 제시하는 수수료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여신전문금융법에서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에서는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 및 영세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 책정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됨

[그림 VI-5] 「3-당사자」체제에서 신용카드 거래흐름 및 수수료 발생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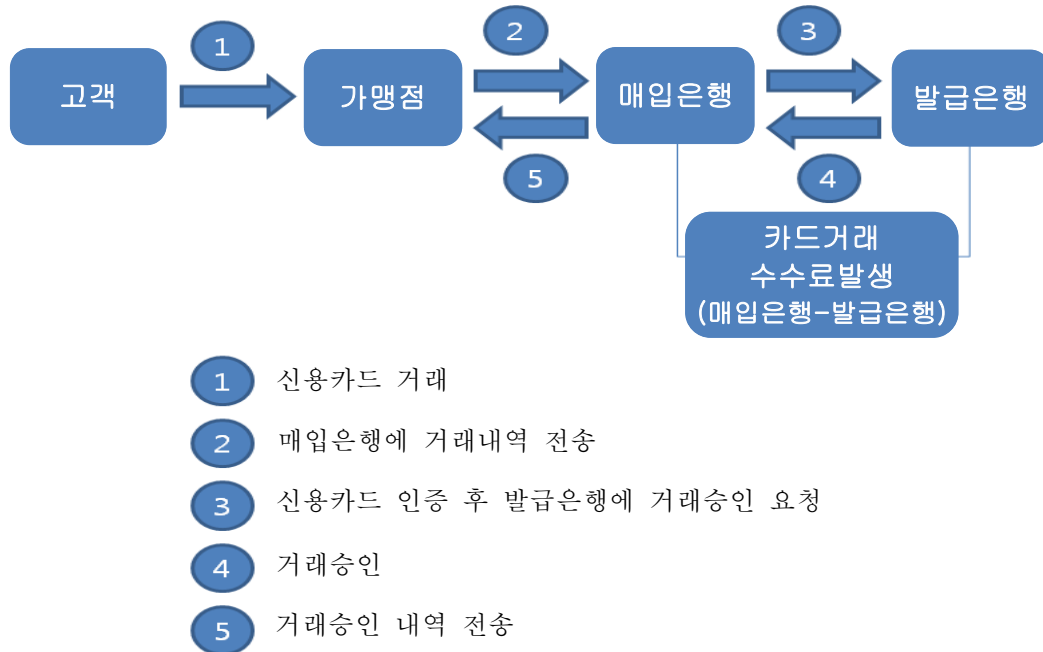


- ① 신용카드 거래
- ② 거래내역을 신용카드사에 전송
- ③ 카드거래에 대한 승인

나. 카드채권매입업무와 카드발급업무를 구분하여 경쟁체제 확보

- 「4-당사자」체제에서는 신용카드사업자는 매입사와 카드 발급사로 구분되며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할 경우 매입사와 카드 발급사 간 정산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4-당사자」체제에서는 「3-당사자」체제와는 달리 카드발급업무와 전표매입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신용카드 전표매입사가 카드 발급사에게 신용공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임
 - 전표매입은행은 신용카드가맹점보다 카드거래 수수료에 대한 협상력이 높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카드발급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수수료 협상을 할 수가 있으며, 경쟁을 통하여 가장 낮은 정산수수료를 제시하는 카드발급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음
 - 「4-당사자」체제에서의 이러한 경쟁관계로 인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3-당사자」체제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됨

[그림 VI-6] 「4-당사자」체제에서 신용카드 거래흐름 및 수수료 발생 시점



다. 호주의 사례

□ 호주는 정부 주도적 개입을 통해 전반적인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서 2003년 「4-당사자」 체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3-당사자」 체제와 경쟁을 유발하였으며, 이러한 개혁조치 이후 「4-당사자」 체제를 이용하는 MasterCard, VISA 카드의 수수료율은 조치 전 1.33% 수준에서 2011년 현재 0.81% 수준으로 대폭 인하됨³¹⁾

○ 반면, 우리나라의 카드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는 가맹점 공동계약제도가 유일하지만 전체 가맹점의 1.2% 수준인 2만 5,000점만이 가맹점 공동계약을 맺고 있으며, 전체 거래의 0.01% 수준의 결제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가맹점 공동계약제도 이용시 가맹점은 매출전표를 ‘전자’방식이 아닌 ‘실물’

31) 「3-당사자」 체제를 사용하는 America Express와 Diners Club은 개혁조치 전 각각 2.46%와 2.36%였던 가맹점수수료율이 2011년 현재 1.88%와 2.10%수준으로 인하됨

로 제시해야 하고 결제대금 회수기간이 더 길어 가맹점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임

<표 VI-3> 호주 카드사별 가맹점수수료 추이

(단위: %)

연도	Bankcard, MasterCard, VISA	American Express	Diners Club
2003(개정)	1.33	2.46	2.36
2004	0.99	2.40	2.31
2005	0.92	2.34	2.31
2006	0.88	2.23	2.24
2007	0.83	2.16	2.18
2008	0.80	2.09	2.13
2009	0.81	1.97	2.12
2010	0.81	1.92	2.12
2011	0.81	1.88	2.10

주: 호주는 2003년부터 「4-당사자」 체제를 도입함
2011년은 6월까지 평균임

자료: Reserve Bank of Australia, 각 연도

-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카드사업자 간의 경쟁체제 확보를 통하여 시장기능에 의하여 수수료가 적정 수준으로 인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입장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개입하기보다는 경쟁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용카드 결제의 「3-당사자」 체제로 인한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과 업종 간 과도한 수수료 편차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
 - 「3-당사자」 체제에서 카드사업자는 수수료 결정에 대한 협상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4-당사자」 체제의 도입을 통하여 신용카드사업자 간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4.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효율적 가격결정을 저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존재함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1987년 5월 30일 최초로 도입된 「신용카드업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용카드업법」의 도입 초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없었음
 - 그러나 1990년 12월 31일 「신용카드업법」을 개정하면서 동법 제15조에 카드결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가격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제3항을 추가하여 가격결정구조를 왜곡시키는 원인을 제공함
 -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조항들을 그대로 방치한 가운데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왜곡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결정체계가 더욱 악화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의 수수료 추가부과 금지규정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임
 - 양방향 시장의 특성을 가진 신용카드거래에 있어서 수수료 문제의 핵심은 비용부담의 주체 및 구조임
 - 사회후생을 고려할 때, 적절한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과 소비자 간의 수요, 비용, 그리고 외부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여신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은 가맹점수수료를 가맹점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여 가맹점수수료율의 합리적 결정을 저해하고 있음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의 카드결제 거부 불가규정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가맹점이 수수료 차이·거래비용 등을 고려해 가맹점에게 유리한 지급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둔 것임
 -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의 목표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한 것이며,

가맹점이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탈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정된 것이나 현재는 현금영수증제도로 인하여 현금매출에 대해서도 과표양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동 조항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사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하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 가맹점수수료 협상 등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며, 동 조항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제활동이 법적 제약을 받아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임

□ Rochet and Tirole(2003)³²⁾에 따르면, 양방향 시장인 신용카드 시장에서 정부가 여러 관련 이해당사자 중에서 1개 이해당사자만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경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 Rochet and Tirole(2003)은 수수료 추가부담 금지규정(No Surcharge Rule)은 신용카드 결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무시하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일관성(Price Coherence)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임의로 정한 규정으로 이러한 시장구조에서 소비자들은 결제수단의 효율성 등을 무시하고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게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임³³⁾
- 즉,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용카드거래로 얻게 되는 혜택으로 인하여 결국 시장에서 신용카드결제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임
- 이러한 비합리적 소비행동으로 인하여 가맹점은 더 높은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사회 전체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함
- Rochet and Tirole(2003)은 이와 같이 수수료 추가부담 금지규정(No Surcharge Rule)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의 결제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모순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함

32) Rochet and Tirole (2003), 『Two-Sided Markets: An Overview』의 pp. 36~38 참조

33)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거래당 0.5만원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는 2.0, 직불카드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0.4로 가정하는 경우, 이때 신용카드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¹⁾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0.4, 현금 0으로 나타남

- 또한, OECD에서 2006년 발간한 『Policy Roundtables: Competition and Efficient Usage of Payment Cards』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의 수수료 추가부담 금지규정(No Surcharge Rule)은 카드결제에 발생하는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분석함³⁴⁾
 - 즉, 시장경제에서 제품가격은 생산비용을 기초로 정해져야 하나 수수료 추가부담 금지규정으로 인하여 현금결제에 비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가맹점수수료 등으로 인한 비용이 더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격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임
 - OECD 보고서는 한 나라의 경제에서 신용카드거래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소비자의 지속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수료 추가부담 금지규정(No Surcharge Rule)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함
 - 이는 만약 같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신용카드거래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면 신용카드거래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임
 - 하지만 신용카드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 이후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함

- 최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주요 선진국은 수수료 추가부담 금지규정(No Surcharge Rule)을 폐지하였으며, 호주도 2003년 『4-당사자』 체제를 도입하면서 동 규정을 폐지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가맹점이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추가수수료를 적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4) 『Policy Roundtables: Competition and Efficient Usage of Payment Cards』(2006) 보고서 pp. 8~9에 따르면 “Certain card network rules often have effects that maintain the market power of a card network by limiting the ability of retailers to influence choice of payment mechanisms.”로 정의하여 해당 규제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지급수단 선택에 대한 제한을 둠으로써 신용카드 산업(사업자)의 시장우위를 유지시켜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완전경쟁에 반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 왜곡된 신용카드 시장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3항, 그리고 관련 벌칙조항인 동법 제70조의 폐지는 신용카드 수수료 결정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당연함
- 이외에도 가맹점수수료율 교섭을 위한 가맹점 단체설립의 실효성 제고 및 소비자나 가맹점이 카드회사의 수수료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하여 비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시제도의 도입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 등을 통해 보장해야 함

참 고 문 헌

- 김재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 방안 및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9. 9.
- _____,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 11.
- _____,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적정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10.
- 김재진·김도성, 『대학등록금 납부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1. 10.
- 김재진·김진수·한상국, 『신용카드 거래활성화정책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1. 3.
- 김재진·김진수·홍범교,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분석 및 대책』, 한국조세연구원, 2003. 2.
- 김재진·한상국,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3. 2.
- 나승성, 「직불카드·체크카드의 이용현황 및 개선과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3.
- 성명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 경제현안분석 제69호, 국회예산정책처, 2011. 12
- 여신금융협회, 계간 『신용카드』, 2006. 9
- 이재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주간 『금융브리프』, 제16권 제34호, 한국금융연구원, 2007. 8.
- 이재연·김병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표준안』, 한국금융연구원, 2007. 8
- 전병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11.
- 전승훈·김재진, 『납세의식 선진화와 국세행정 개선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2. 2.
- 한국여신금융협회,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여전협통계.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연도.
- _____,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2009.
- _____,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사례 - 외국의 사례 조사 및 비교」, 2011.

_____, 『미국 카드시장 규제와 주요 내용과 카드산업의 대응현황』, 2010. 11.

_____, 『주요국 지급카드 수수료 비교 및 시사점』, 2010. 04.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Statistics on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 in the CPSS Countries*, September 2011.

Baxter, William F., “Bank Interchange of Transactional Paper: Legal and Economic Perspective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83.

Frankel, Alan S. and Allan, L. Shampine, “The Economic Effects of Interchange Fees,” *Antitrust Law Journal*, 2006.

Gans, Joshua S. and King, Stephen P., “Approaches to Regulating Interchange Fees in Payment Systems,” *Review of Network Economics*, Vol. 2, Issue 2, June 2003, pp.125~145.

Joseph, Farrell, “Efficiency and Competition between Payment Instruments,” *Review of Network Economics*, Vol. 5, Issue 1, March 2006, pp.26~44.

OECD, Competition and Increased efficiency for Retail Payment Cards, DAF/DMF(2006)15, June 2006.

_____, Policy Roundtables: Two-Sided Markets, 2009.

Payments System Review Conference, Reserve Bank of Australia, April 2008.

Reserve Bank of Australia, Payments System Review Conference: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in Sydney on 29 November 2007.

_____, Reform of Australia’s Payments System: Conclusions of the 2007/2008 Review, September 2008.

_____, Reform of Australia’s Payments System: Preliminary Conclusions of the 2007/2008 Review, April 2008.